

<표 3-7> 생활보호 장애인 가구주가 원하는 새로운 직업

분류	빈도(명)	백분율(%)
전문. 관리. 사무직	14	6.7
단순 사무직	5	2.4
자영업	47	22.6
영세자영업	12	5.8
판매. 서비스업	14	6.7
단순 서비스업	15	7.2
생산. 기능직	10	4.8
비숙련 단순 노동	13	6.3
농어업	4	1.9
기타	61	29.3
무응답	13	6.3
합	208	100.0

<표 3-8> 장애유형에 따른 생활보호 장애인 가구주가 원하는 새로운 직업

분류	전문 관리 사무직	단순 사무 직	자영업	영세 자영업	판매 서비스	단순 서비스	생산 기능 직	비숙련 단순 노동	농 어업	기타	무 응답	합
지체장애	7.2	2.6	27.6	7.9	5.9	5.3	3.9	5.3	2.0	25.7	6.6	132(73.1)
시각장애	16.7		8.3		16.7	25.0		8.3		25.0		12(5.8)
청각·언어	4.8		9.5		4.8		9.5	14.3	4.8	42.9	9.5	21(10.1)
기타		4.5	9.1		4.5	18.2	9.1	4.5		45.5	4.5	22(10.6)
무응답						100.0						1(.5)
합(명)	14	5	47	12	14	15	10	13	4	61	13	208
%	6.7	2.4	22.6	5.8	6.7	7.2	4.8	6.3	1.9	29.3	6.3	100.0

한편 새로운 직업을 장애유형에 비추어 살펴보면 <표 3-8>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자영업의 경우 지체장애가 27.6%로 높게 나타났고, 단순서비스와 전문관리사무직의 경우 시각장애가 25.0%와 16.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 취업의 어려움

직업을 구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2.7%가 <표 3-9>에서 보듯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이 없다'는 것을 꼽았다. '고용주의 거부'와 '기술

<표 3-9> 생활보호 장애인가구주의 취업시 어려운 점

분류	빈도(명)	백분율(%)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 지 몰라서	9	4.3
기술이 없어서	20	9.6
직장내 편의시설이 없어서	3	1.4
고용주가 거부해서	23	11.1
취업알선 기관의 부족	4	1.9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68	32.7
보수가 맞지 않아서	10	4.8
출.퇴근(교통)이 불편해서	9	4.3
기타	44	21.2
무응답	18	8.7
합	208	100.0

의 부족'이 11.1%와 9.6%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남부복지관 자료(p.25)의 경우도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부족' 28.4%, '기술이 없어서' 12.1%, '고용주의 인식 부족' 11.3% 순으로 취업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취업근란이유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인의 나이, 취업분야 등의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부록표 15> 참조).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라는 대답은 지체보다는 시각, 청각언어, 기타의 경우 높게 나왔고, 20대와 50, 60대의 경우 높게 나왔다. '기술이 없어서'라는 대답은 지체장애의 경우 응답률이 높았고, 20대가 높게 나왔다. '고용주가 거부해서'라는 대답은 시각장애와 기타의 경우 16.7%, 18.2%로 높게 나왔고, 등급이 높은 경우 많이 나왔으며, 20대, 70대, 50대, 40대 순으로 많이 대답했다.

분업의 확대와 전문화로 인해 점차 직종이 세분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취업근란의 이유를 '고용주의 거부'나 '기술의 부족'으로 생각하기 보다 '적합한 직종의 부족' 또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 지 몰라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취업가능한 직종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사회 일반의 차원에서의) 정보의 미공개가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일 예로 미국의 포드 자동차에서는 초창기에 자동차 전체 조립공정인 7천8백22공정 가운데서 두 다리가 없어도 가능한 공정이 6백 70, 두 손이 없어도 가능한 공정이 2, 한쪽 다리가 없어도 가능한 공정이 2천6백37, 한쪽 손이 없어도 가능한 공정이 7백15, 눈이 보이지 않아도 가능한 공정이 10, 도합 4천34공정에 9천5백63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예를

통해 당시보다 산업이 더욱 발달하고 세분화된 현재에 와서 아직도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이 없다고 논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 관련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라고 하겠다.

3. 가구주 본인의 수입

조사대상 장애인 본인의 월평균수입은 '10만원 미만'이 31.7%, '10-20만원 미만'이 17.8%를 차지해 '없다' 7.7%와 합하여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한달수입이 20만원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에 상관없이 생계보조금이나 공식, 비공식 후원금 등을 포함하여 조사된 것으로, 구체적인 임금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취업장애인에 한하여 수입을 살펴보면 <표 3-10>에서와 같이 20%도 안되는 이들만이 40만원미만의 수입을 나타내고 있어 50%이상이 40만원이상의 수입을 보이는 보사연 서울자료와는 차이를 보였다. 물론 보사연 자료에서도 일반 장애인가구주의 수입과

<표 3-10> 장애인 본인의 수입비교

분류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빈도(명) 백분율(%)		취업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빈도(명) 백분율(%)		서울거주 취업한 장애인 가구주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없다	16	7.7				
10만원미만	66	31.7	9	10.2	6	3.8
10-20미만	37	17.8	21	23.9	18	11.5
20-30미만	26	12.5	21	23.9	15	9.6
30-40미만	26	12.5	21	23.9	15	9.6
40-50미만	9	4.3	8	9.1	21	13.5
50-60미만	4	1.9	3	3.4	20	12.8
60-70미만 ¹⁾					8	5.1
70-100미만					15	9.6
100-150미만					9	5.8
150-200미만	3	1.4	3	3.4	7	4.5
200-300미만					3	1.9
300이상					2	1.3
무응답	21	10.1	2	2.3	17	10.9
합	208	100.0	88	100.0	156	100.0

주 : 1. 보사연 서울자료와 비교.

2. 1)의경우,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60만원이상'으로 응답함.

<표 3-11> 직업, 평균노동일에 따른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본인 수입비교

분류	무응답		10만원 미만		10-20만 원미만		20-30만 원미만		30-40만 원미만		40-50만 원미만		50-60만 원미만		60만원 이상		합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단순.사무직					100.0		25.0	50.0	50.0	25.0							1(1.1)
자영업							17.6	23.5	23.5	5.9							4(4.5)
영세자영업			5.9	17.6	23.5	33.3	17.6	23.5	23.5	5.9							17(19.3)
판매.서비스업							25.0	33.3	33.3	33.3							3(3.4)
단순 서비스업							11.8	15.6	15.6	50.0							4(4.5)
생산.기능직							17.6	23.5	23.5	11.8							17(19.3)
비숙련 단순노동			2.4	7.2	28.6		11.9	15.6	15.6	21.4							42(42.7)
5일미만					33.3		33.3	33.3	33.3								3(3.4)
5-10일					37.5		37.5	37.5	37.5								8(9.1)
11-15일			4.5	13.6	27.3		9.1	12.1	12.1	18.2							22(25.0)
16-20일			4.2	12.9	25.0		8.3	11.1	11.1	33.3							24(27.3)
21-25일					27.8		5.6	7.5	7.5	22.2							18(20.5)
26-30일					8.3		41.7	55.6	55.6	25.0							12(13.6)
무응답					100.0		100.0	100.0	100.0								1(1.1)
합(명)	2	9	21	21	21	21	21	21	21	8	3	3	3	3	3	3	88
%	2.3	10.2	23.9	23.9	23.9	23.9	23.9	23.9	23.9	9.1	3.4	3.4	3.4	3.4	3.4	3.4	100.0

비장애인 일반의 수입 수준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생활보호 장애인의 경우 임금 수준이 더 낮은 것이다.

한편 본인 수입을 직업별, 노동일별로 살펴보면 <표 3-11>에서 처럼 영세자영업과 비숙련 단순노동의 17.6%, 11.9%가 10만원 미만의 수입을 보이고 있었고, 생산기능직이 40만원 이상의 수입을 보이는 이가 안정되게 분포하고 있었다. 한달 평균 노동일에 따르는 본인의 수입은 10일 미만을 일하는 경우는 20만원 미만의 수입을 많이 보이고 있으며, 20일 미만을 일하는 사람은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수입 분포가 높고, 20일 이상 일하는 이들의 경우 50만원 까지의 분포가 폭 넓게 나타나고 있어 취업직종보다는 취업의 안정성이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한다.

4.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의 취업보완책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애인의 취업, 특히 빈민장애인의 취업은 매우 불완전하게 소수의 직종에 편중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열악한 취업조건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직업훈련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고법)이 별다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빈민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장고법이 취업형태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애인 직업훈련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은 장애인 재활시설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분야는 제강, 전자, 건축, 섬유, 인쇄, 공예 등 50여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¹³⁾.

본 조사에서는 <표 3-12>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89.9%가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직업훈련에 관한 복지 서비스가 존재하는 지도 모르는 이는 전체의 51.9%나 되었다. 직업훈련의 종류는 특별히 편중되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직업훈련을 받은 이들이 매우 소수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의 종류를 세분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표 3-13> 참조).

이러한 결과는 직업훈련경험을 조사한 남부복지관자료(p. 27)에서의 '직업훈련경험있다' 33.8%, '훈련중이다' 5.8%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보사연 서울 자료의 경우 대부분이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훈련에

13) 보사부, 장애인 복지정책 발전과정과 현황, 1993

<표 3-12> 생활보호 장애인 가구주의 직업훈련경험유무

분류	빈도(명) 백분율(%)	
모른다	108	51.9
알고있다	79	38.0
이용한 적있다	21	10.1
합	208	100.0

<표 3-13>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가 받은 직업훈련의 종류

분류	빈도(명)	백분율(%)
시합조립/수리	1	4.8
도장	1	4.8
컴퓨터(정보처리)	2	9.5
인쇄	1	4.8
양재.편물	1	4.8
목공예	2	9.5
기합	1	4.8
전자	1	4.8
안마	1	4.8
기타	8	38.1
무응답	2	9.5
합	21	100.0

대한 욕구도 생활비 보조, 치료 등의 다른 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보호자 장애인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부록표 15> 참조). 생활보호자 장애인들의 경우 직업훈련경험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각 복지관 등에서 실시되는 직업훈련이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직업훈련이 곧장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남부복지관자료(p. 28)에서는 대상자의 35.1%만이 훈련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도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의 35.3%가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직자도 6.7%나 됐다(<부록표 17> 참조).

한편 나이과 직업훈련의 경험여부 혹은 인식여부는 많은 편차를 보이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직업훈련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서 직업훈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33.3%인데 반하여 70대는 100%, 60대는 68.8%가 직업훈련에

<표 3-14>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의 장고법 인식도

분류	빈도(명) 백분율(%)	
모른다	120	57.7
알고있다	81	38.9
이용한 적있다	7	3.4
합	208	100.0

대해 모르는 것으로 응답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 지체가 33.3%, 50.0%로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적었으나 이용률은 8.3%, 9.2%로 낮았고 청각·언어, 기타의 경우 71.4%, 54.5%로 모른다는 응답이 많은데 반하여 이용률은 14.3%, 13.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부록표 18> 참조).

이러한 조사결과는 취업제약을 극복하는 최선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직업훈련이 빈민장애인에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으며, 현실적합성도 없어 형식적인 복지 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1조)으로 한다'고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은 89년 12월에 제정되어 9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93년 고용의무를 완전시행). 이 장고법은 300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2%이상 고용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해서 장애인이 고용될 경우 전국에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2,300-2,500개소 정도에 약 4만명 정도가 고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장고법 실시 3년째인 93년의 경우 280여개 사업장에서만 장애인을 2%이상 고용하였고, 고용된 인원은 8천명을 조금 넘고 있을 뿐이어서 90%정도가 이 법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고용부담금이 93년 한 해 420억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고용촉진법의 진정한 의도인 장애인의 직업재활, 직업안정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이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이 법의 실시 4년째인 1994년 현재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중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표 3-14>에서 나타나듯이 '이용한 적이

<표 3-15> 장고법이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의 고용에 미친 영향력

분류	빈도(명)	백분율(%)
상당히 쉬워졌다	1	1.1
약간 쉬워졌다	10	11.4
그저 그렇다	23	26.1
쉬워 지지 않았다	35	39.8
오히려 어려워 졌다	5	5.7
기타	3	3.4
무응답	11	12.5
합	88	100.0

<표 3-16> 장애유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장고법 영향력 인식도

분류	상당히 쉬워졌다							합
	상당히 쉬워졌다	약간 쉬워졌다	그저 그렇다	쉬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려워 졌다	기타	무응답	
지체장애	1.4	14.5	27.5	40.6	2.8	4.3	8.7	69 (78.4)
시각장애			28.6	42.9			28.6	7 (8.0)
청각·언어장애				40.0	20.0		40.0	5 (5.7)
기타			28.6	28.6	28.6		14.3	7 (8.6)
합(명)	1	10	23	35	5	3	11	88
%	1.1	11.4	26.1	38.8	5.7	3.4	12.5	100.0

있는' 3.4%를 합하여 42.3%에 그치고 있었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고용촉진법으로 인해 고용이 쉬워졌다고 대답한 이들은 '상당히 쉬워졌다' 1.1%, '약간 쉬워졌다' 11.4%에 불과하고 '오히려 어려워 졌다'고 응답한 이들도 5.7%나 됐다(<표 3-15> 참조). 92년 남부복지관 자료(p.29)에서도 장고법을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은 63.6%, 장고법으로 인해 '고용이 쉬워지지 않았다'고 대답한 사람은 61.5%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도 이 법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 법이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에 뚜렷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나이에 따른 장고법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이용한 적 있는 사람은 20대가 50.0%로 가장 높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모르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0대 33.3%, 70대 84.7%) 장애유형별로는 이용률에서 청각 언어장애가 다른 유형의 장애

에서의 이용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이용한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부록표 19〉 참조). 한편 고용의무제의 이용과 직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직업에 고용의무제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 20〉 참조).

법 영향력에 대한 인식도와 장애유형과의 비교해보면 〈표 3-16〉에 나타나는 것처럼 지체장애인들만이 장고법으로 인해 고용이 쉬워졌다고 응답하고 시각의 경우는 쉬워지지 않았다는 응답을 많이 보이고 있다. 이는 장고법이 지체장애 중심으로 특히 시각이나 중증장애를 배제한 채 제정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의료

1. 장애발생후의 치료

장애발생 직후의 치료는 장애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상 장애발생 직후의 치료는 매우 불충분하게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장애가 심화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1977년, 1982년의 4, 5차 경제개발의 한 부분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전까지 의료시설과 의료수준이 낮았을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가 자유시장 경제원칙하에 제공되는 고가의 서비스에 불과하여 많은 국민들이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을 보장받지 못한 것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장애발생후 치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표 4-1〉에서 보는 것처럼 15.4% 였고 '충분히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p.20)과 서울시의 자료(p.117)에서는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7.0%, 14.7%, 충분하게 받은 사람이 22.9%, 16.7%로 나타나고 있어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들이 약간 더 낮은 치료율을 보이고 있다.

보사연(서울)자료에서 일반 장애인 가구주중 장애발생시 의사로부터 치료받지 않은 사람이 12.8%로 나타나고 있고, 치료를 받은 사람중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0%에 못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충분치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치료를 받는다면 회복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41.8%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은 장애인이 의료재활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부록표 22〉, 〈부록표 23〉 참조).

〈표 4-1〉 생활보호장애인의 장애발생후의 치료정도

분류	빈도(명)	백분율(%)
전혀 받지 못했다	32	15.4
거의 받지 못했다	23	11.1
약간 받았다	75	36.1
그런대로 잘 받았다	51	24.5
매우 충분히 받았다	23	11.1
기타	1	.5
무응답	3	1.4
합	208	100.0

<표 4-2> 생활보호장애인이 장애발생직후 치료를 전혀 못 받은 이유

분류	빈도(명)	백분율(%)
돈이 없어서	15	46.9
치료시설이 없어서	5	15.6
치료에 대해 잘 몰라서	2	6.3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1	3.1
치료시설이 너무 멀어	1	3.1
가족의 무관심 때문에	1	3.1
기타	5	15.6
무응답	2	6.3
합	32	100.0

<표 4-3> 생활보호장애인중 장애발생직후 받은 치료의 만족도

분류	빈도(명)	백분율(%)
매우 만족한다	6	3.4
만족한다	26	14.8
그저 그렇다	60	34.1
불만족스럽다	58	33.0
매우 불만족스럽다	24	13.6
무응답	2	1.1
합	176	100.0

한편 대상자들이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표 4-2>) '돈이 없어서'가 4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부복지관 자료에서는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 중 '경제적 곤란'이 61.9%나 차지하고 있으며, 보사연 서울 자료도 의사의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이들 중 46.0%가 '경제적인 곤란'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 26> 참조). 본 조사의 응답자중 '치료 시설이 없어', '치료에 대해 몰라서', '치료기관이 멀어서' 등도 15.6%, 6.3%, 3.1%로 나타나서 경제적인 요인과 더불어 치료시설 미비와 치료에 대한 무지도 장애발생시 장애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를 받은 이들의 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매우 만족한다' 3.4%, '만족한다' 14.8%로 18.2% 정도만이 치료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46.8% 정도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장애유형별로 치료정도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경우 청각·언어

<표 4-4>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의 의료재활치료의 이용여부

분류	빈도(명)	백분율(%)
모른다	120	57.7
알고있다	51	24.5
이용한 적있다	37	17.8
합	208	100.0

나 기타 장애의 장애인에 비해 충분히 치료를 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치료정도와 치료만족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치료에 만족하는 사람중 83.3%가 치료를 매우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었다.(<부록표 21> 참조)

2. 의료재활서비스의 이용

의료재활은 의학적 치료, 수술,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사회적 장애요인을 치유하거나 보장구 장착 등을 통하여 의학적 장애의 충격을 경감 또는 제거시키는 방법이다¹⁴⁾. 따라서 의료재활은 재활의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재활서비스는 재활전문의를 중심으로 하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치료와 보장구를 장착할 경우 이에 관련한 훈련등을 통하여 실시된다고 한다¹⁵⁾. 그 각각의 이용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활치료

의료재활서비스의 하나인 재활치료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57.7%,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응답자의 17.8%이다. 이는 그나마 다른 복지서비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만(<표 4-4> 참조) 장애인의 의료적 욕구중 재활치료의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재활치료 서비스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보장구

14)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1993

15) 보사부, 장애인 복지정책 발전과정과 현황, 1993

<표 4-5> 서울 일반장애인가구주의 보장구소유여부

분류	빈도(명)	백분율(%)
있다	202	50.8
없다	186	46.7
미상	10	2.5
합	398	100.0

자료 : 보사연(서울).

<표 4-6> 서울 일반장애인가구주의 사용 보장구종류

분류	빈도(명)	백분율(%)
의지	11	5.2
목발	91	42.9
휠체어	7	3.3
근시안경	21	9.9
난시안경	4	1.9
근시및 난시안경	2	.9
원시및 난시안경	10	4.7
약시안경	1	.5
확대경	25	11.8
망원경장치안경	1	.5
보청기	8	3.8
보조기	9	4.2
보조화	2	.9
기타	9	4.2
미상	11	5.2
합	212	100.0

자료 : 보사연(서울).

<표 4-7> 서울 일반장애인가구주가 필요한 보장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분류	빈도(명)	백분율(%)
돈이 없어서	21	22.8
구입처를 몰라서	2	2.2
불편해서	7	7.6
외관상 흉해서	1	1.1
장애정도가 심해서	8	8.7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13	14.1
기타	8	8.7
무응답, 미상	32	34.8
합	92	100.0

자료 : 보사연(서울).

의료재활서비스의 다른 하나는 보장구 지원사업이다. 보장구는 장애인의 재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장구 사용의 일반 실태를 살펴보면 보사연(서울) 자료에서 서울 일반 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보장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50.8%이고 사용하는 보장구는 목발 41.9%, 확대경 11.8%, 근시안경 9.9% 순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5>, <표 4-6> 참조).

보장구가 필요한데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주요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돈이 없어서' 22.8%)을 들고 있다(<표 4-7>). 서울시 자료에서도 보장구의 불편한 점으로 '보장구 성능불만족' 13.9% 다음에 '보장구 구입비용' 10.3% 을 들고 있고, 보장구 지원에 관한 욕구도 '구입비용보조'가 15.3%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의료재활 서비스로서의 보장구 지급사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정부의 보장구 지급사업은 생활보호자 장애인들을 기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수혜 폭이 매우 좁을 뿐 아니라 예산도 한정되어 있다. 93년의 경우 서울시의 보장구 지급 예산은 1억1백8십만원이었으며, 실질적 보급은 702건에 9천4백2십6만6천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구체적 내용은 <표 4-8>에 보는 것처럼 의수족 117건으로 2천8백6십9만4천원의 가장 많은 예산이 지급되었다.

본 조사의 대상자 중 정부로부터 보장구를 지급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23.1%에 불과하다(<표 4-9>). 보장구를 지급받은 이들 중 27.1%는 '불편한 점이 없다'고 하였으나, 18.8%가 '다시 받을때까지의 기간이 길다'는 점을, 12.5%가 '보장구를 위한 지급액수가 너무 적어 보장구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타'에 대답한 이들도 고장이 잦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표 4-10>). 정부의 보장구 지급사업을 '모른다'고 대답한 이는 전체의 45.7%로 남부복지관 자료(p.22)의 47.5%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남부복지관의 자료에서 보장구를 지급받은 경험이

<표 4-8> 93년 서울시 보장구 지급실적

분류	지급건수	지급액수(천원)
의수족	117건	28,694
보조기	82건	16,076
휠체어	171건	24,907
보청기	95건	22,886
검진비		1,702
합	702건	94,266

자료 : 서울시, 사회과 재활지원계자료, 1994

<표 4-9> 정부의 보장구지원사업에 대한 생활보호장애인의 인지여부

분류	빈도(명)	백분율(%)
모른다	95	45.7
알고있다	65	31.3
이용한 적 있다	48	23.1
합	208	100.0

<표 4-10> 생활보호장애인들의 정부 지급보장구에 대한 불만족 이유

분류	빈도(명)	백분율(%)
불편한 점 없다	13	27.1
보장구가 한정(액수가 적다)	6	12.5
받는 절차 복잡, 검진기관이 멀다	5	10.4
보장구 지급시기 한정	2	4.2
다시 받을때까지 기간길다	9	18.8
기타	5	10.4
무응답	8	16.7
합	48	100.0

<표 4-11> 생활보호 장애인가구의 병원이용 정도

분류	빈도(명)	백분율(%)
자주한다	62	29.8
가끔한다	52	25.0
대체로 못한다	26	12.5
거의 못한다	44	21.2
전혀 못한다	22	10.6
무응답	2	1.0
합	208	100.0

<표 4-12> 서울 일반 장애인 가구주의 건강상태

분류	빈도(명)	백분율(%)
매우 건강못함	68	17.1
비교적 건강못함	131	32.9
보통	48	12.1
비교적 건강	118	29.6
아주 건강	16	4.0
미상	17	4.3
합	398	100.0

자료 : 보사연(서울).

있는 사람이 9.1%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보장구 지급사업이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생활보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 조사에서 정부 지원 보장구의 이용은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일반장애인 가구주의 경우도 비슷하게 나타났다(<부록표 28> 참조).

3. 병원이용정도

응답자들은 다른 일상활동에 비하여 병원을 이용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1>에서 살펴보면 29.8%가 병원을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25.0%가 '가끔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빈민장애인의 잦은 병원이용은 장애와 빈곤이 이중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보사연(서울) 자료에서 서울의 일반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매우 건강하지 못함' 17.1%, '비교적 건강 못함' 32.9%로 약 50%에 이르는 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표 4-12>), 빈곤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처해있는 생

활보호대상 장애인의 경우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과 재활치료 등을 이유로 하여 의료적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서울시 자료(p.121)에서도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의료혜택이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한 이들이 40.8%에 이르고 있다. 동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의료재활의 측면에서 '의료보호 본인 부담률을 낮춘다' 27.0%, '지역별 장애인 전용 의료재활시설을 신설한다' 26.6% 등을 원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빈민장애인의 강한 의료적인 욕구는 일반 장애인들의 경우와는 약간 다른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장애에 원인이 있다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낮은 수입에 근거하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 작업환경 등이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빈곤과 건강의 관계는 빈곤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이 건강수준을 저하시키고, 저하된 건강상태가 치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경제활동을 제약함으로써 다시 빈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

한편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병원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의료보호혜택(거택의 경우 외래, 입원 모두 무료, 자활의 경우 입원은 20% 본인 부담, 외래는 1회에 1,000원, 특수진료는 제외)이 주어지므로 약값이 따로 드는 약국보다 병원을 더 자주 이용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5. 장애인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사회,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장애인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용·이용 시설, 의료, 교육, 직업, 세계지원 서비스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현재 장애인에게 수혜되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해 빈민장애인, 특히 생활보호장애들의 인지 및 이용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실제로 현재의 복지서비스가 장애인, 특히 빈민장애인에게 거의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설문조사시 12가지 항목을 조사했는데 이 중 재활치료, 직업훈련, 보장구 지급에 관한 문항은 앞의 취업구조, 의료의 부분에서 분석했으며, 무응답이 많거나 응답자들이 문항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관계없는 응답이 나온 항목은 분석하지 않았다. 분석된 항목은 수용시설, 복지시설서비스, 특수교육, 세금 및 공공요금할인제(전화요금 감면, 자동차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면제,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할인, 항공료 할인, 국·공립박물관 및 고궁·농원등의 무료입장) 등 4가지이다¹⁶⁾.

1. 수용시설

수용시설이란 시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수용시켜 일상생활의 보호를 함과 동시에 필요한 원조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¹⁷⁾.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용시설은 지체장애인 수용시설 33개소, 시각장애인 수용시설 11개소, 청각·언어 장애인 수용시설 13개소, 정신지체인 수용시설 44개소 등 101개소이며, 10,326명의 장애인이 수용되어 있다(<부록표 30> 참조)¹⁸⁾.

본 조사 응답자중 수용시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생활보호 장애인은 <표 5-1>에서 보듯이 이용한 적이 있는 7.2%를 합하여 56.2%에 불과했고, 43.8%가 '모른다'고 응답해 수용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 그 밖의 복지서비스로 시행되는 것은 생활보호사업(생계보조수당지급, 의료비 지원, 자립자금대여, 자녀교육비 지원, 보장구 무료 교부), 장애인용 승용차 LPG사용허가, 맹인심부름센터 설치운영, 그룹홈 등이 있다.

17) 서울시, 서울시장애인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1990:56

18)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1993. 12. 보건사회연구원

한편 보사연 연구와 보사부 조사가 각기 장애인 수용시설 수와 수용장애인 수가 다르게 보고 되고 있다. 93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에 의하면 93년 1월 현재 전체 보호시설 709개소 중 장애인보호시설은 20.6%로 146개소이며,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총 77,843명 중 17.3%인 13,471명의 장애인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보건사회부, '93생활보호대상자 현황, 1993).

<표 5-1> 생활보호장애인의 수용시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

분류	빈도(명)	백분율(%)
모른다	91	43.8
알고있다	102	49.0
이용한 적있다	15	7.2
합	208	100.0

<표 5-2> 생활보호장애인의 복지시설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

분류	빈도(명)	백분율(%)
모른다	101	48.6
알고있다	70	33.7
이용한 적있다	37	17.8
합	208	100.0

2. 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는 시설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의료평가, 조기교육,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심리평가, 가족치료, 취업상담 및 알선, 직업능력 평가, 보호작업장, 직업훈련, 직업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수련회, 취미교실 등이 있다.¹⁹⁾ 이러한 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이용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48.6%는 '모른다', 33.7%는 '알고만 있다', 17.8%는 '이용한 적 있다'고 대답했다(<표 5-2>). 그 서비스 내용을 <표 5-3>의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의료평가(35.0%), 취업상담 및 알선과 직업훈련(23.1%, 33.8%), 수련회(21.1%)를 제외한 다른 복지서비스는 상당히 낮게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반 장애인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보사연(서울) 자료에서 정부 또는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수혜여부와 서비스를 받은 기관 및 내용에 관한 질문에 우선 서비스 수혜 여부는 5.1%가 '받았다', 2.0%가 '현재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표 5-4>). 또한 이용기관은 병원재활시설이 많고, 그 내용은 치료, 검사 등으로 전체적으로 서비스 수혜율이 낮고, 의료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부록표 32>, <부록표 33> 참조)

19)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장애인 복지수요 실태조사 보고서, 1992

<표 5-3> 서울시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분류	백분율(%)
의료평가	35.0
조기교육	13.5
물리치료	19.5
작업치료	3.4
언어치료	9.3
놀이치료	7.4
심리평가	8.9
가족치료	2.0
취업상담 및 알선	23.1
직업능력평가	13.1
보호작업장	6.6
직업훈련	33.8
직업적응훈련	4.6
사회적응훈련	9.5
장애인 수련회	21.1
취미교실	9.3
기타	11.9

자료 : 남부복지관.

<표 5-4> 서울 일반장애인 가구주의 복지관 서비스수혜여부

분류	빈도(명)	백분율(%)
받았다	13	5.1
현재받고있다	5	2.0
없다	127	49.6
미상	11	4.3
합	256	100.0

자료 : 보사연(서울).

이러한 복지시설 서비스는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접근이 쉽고 다양하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대다수의 장애인이 모르거나 이용하지 않고 있어 전달체계, 홍보, 접근방법 등의 문제해결이 요구된다. 특히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빈민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표 5-5> 특수교육·특수학급 현황(93년)

단위 : 개, 명

분류	설립별	기관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특수학교	국립	3	99	1,019	198
	공립	31	666	6,645	1,161
	사립	72	1,189	13,321	1,810
	합	106	1,954	20,985	3,169
특수학급	공립	2,638	3,321	28,210	3,321
합		2,744	5,274	49,195	6,490

<표 5-6> 생활보호장애인의 특수교육 인지 및 이용 여부

분류	빈도(명)	백분율(%)
모른다	124	59.6
알고있다	74	35.6
이용한 적있다	10	4.8
합	208	100.0

3. 특수교육제도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²⁰⁾.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대상자(5세-17세)는 중증장애 45,909명, 경증장애 197,647 명이고, <표 5-5>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들 중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전체의 약 20%인 49,195명뿐이다.

본 조사에서 특수교육제도의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59.6%가 '모른다', 35.6%

20) 특수교육진흥법, 1993년

<표 5-7> 생활보호장애인의 세금할인 및 공공요금 할인제 인지 및 이용 여부

분류	빈도(명)	백분율(%)
모른다	30	14.4
알고있다	30	14.4
이용한 적있다	148	71.2
합	208	100.0

<표 5-8> 나이, 장애유형, 등급, 생활보호유형에 따른 세금 및 공공요금 할인제 이용여부

분류	모른다	알고만 있다	이용한 적있다	합
20 - 29세	50.0		50.0	4(1.9)
30 - 39세	13.0	17.4	69.6	46(22.1)
40 - 49세	13.7	15.1	71.2	73(35.1)
50 - 59세	11.7	13.3	75.0	60(28.8)
60 - 69세	11.8	11.8	76.5	17(8.2)
70 - 79세	42.9	14.3	42.9	7(3.4)
무응답			100.0	1(0.5)
지체장애	11.8	14.5	73.7	152(73.1)
시각장애	8.3	16.7	75.0	12(5.8)
청각·언어장애	23.8	4.8	71.4	21(10.1)
기타	27.3	22.7	50.0	22(10.6)
무응답	50.0		50.0	2(1.0)
1등급	24.1	10.3	65.5	29(13.9)
2등급	18.5	7.7	73.8	65(31.3)
3등급		25.6	74.4	43(20.7)
4등급	6.8	18.2	75.0	44(21.2)
5등급	26.1	13.0	60.9	23(11.1)
6등급	50.0		50.0	2(1.0)
무응답			100.0	1(0.5)
거택보호(1종)	11.3	4.8	83.9	62(29.8)
자활보호(2종)	13.5	18.8	67.7	133(63.9)
무응답	38.5	15.4	46.2	13(6.3)
합(명)	30	30	148	208
*	14.4	14.4	71.2	100.0

가 '알고만 있다', 4.8%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특수교육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6>). 이는 응답자들의 나이가 많고(40대 이상이 70%를 넘는다), 현재 특수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임과 동시에 빈민장애인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교육의 욕구보다는 경제적인 욕구가 우선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다.

4. 세금 및 공공요금 할인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으로 정부에서는 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면제, 전화요금 감면(1-2급 시내통화료의 40%, 3-4급 30%, 5-6급 20%), 철도요금 및 항공요금 할인, 지하철 무료 승차 등과 같은 세금 및 공공요금 할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 및 공공요금 할인제에 대해서 '모른다' 14.4%, '알고만 있다' 14.4%, '이용한 적이 있다' 71.2%로 대부분의 생활보호 장애인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표 5-7>).

세금 및 공공요금 할인제 이용을 나이, 장애유형, 장애등급, 생활보호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표 5-8>과 같이 나타난다. 이 할인제의 이용은 대상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이용자가 거의 50%를 넘고 있으며, 특히 나이가 많거나, 거택보호자들인 경우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장애인복지서비스보다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인데, 세금 및 공공요금할인제가 다른 서비스 보다 비교적 홍보가 많이 됐고, 생활에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의식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인구특성과 장애특성, 그리고 이들의 현재의 사회, 경제적 삶 등은 자신과 사회, 국가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는 밑바탕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일반장애인이나 일반 빈민과도 다른 독특한 삶의 양식 속에서 이들은 독자적인 의식을 형성해 왔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의 의식을 가치관, 자아관, 자신의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부분, 빈곤의 원인, 그 극복방안과 이후의 전망, 단체활동의 가능성과 정치적 안정과 장애인 복지, 빈부격차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치관·자아관

<표 6-1>은 생활보호장애인이 세상과 사물, 그리고 자기자신에 대해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응답이다. 우선 '살아가는데 명백한 법칙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50.5%, '그렇다' 9.6%, '아니다' 3.5%, '매우 아니다' 17.8%로 대부분 이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는 진실로 믿을만한 사람이 있다'에 대해서는 35.6%가 '매우 그렇다', 32.2%가 '매우 아니다'라고 대답해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긍정과 부정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는 질문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 21.6%, '그렇다' 6.7%, '아니다' 5.8%, '매우 아니다' 32.2%로 현재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약간 많으며, '가난이 세습

<표 6-1>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자아관·가치관

단위: 명(%)

분류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저그렇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무응답	합
삶의 법칙	105(50.5)	20(9.6)	37(17.8)	7(3.4)	37(17.8)	2(1.0)	208(100)
믿을 만한 사람	74(35.6)	22(10.6)	30(14.4)	12(5.8)	67(32.2)	3(1.4)	208(100)
행복한 사람	45(21.6)	14(6.7)	52(25.0)	18(8.7)	76(36.5)	3(1.4)	208(100)
가난의 대물림	165(79.3)	18(8.7)	7(3.4)	2(1.0)	14(6.7)	2(1.0)	208(100)
돈이 중요	65(31.3)	37(17.8)	30(14.4)	20(9.6)	54(26.0)	2(1.0)	208(100)
분명한 목표	134(64.4)	28(13.5)	16(7.7)	10(4.8)	17(8.2)	3(1.4)	208(100)

되라는 법은 없다'에 79.3%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해 자녀세대에서의 생활개선을 기대하고 능력에 따라 충분히 가난을 극복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다'에 대해서 31.3%가 '매우 그렇다', 17.8%가 '그렇다', 9.6%가 '아니다', 26.0%가 '매우 아니다'라고해 돈이 중요하다는 데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삶의 목표는 분명히 세워야 한다면 64.4%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보호 장애인들도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와 통념에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6-2>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와 일반장애인의 생활수준인식 비교

분류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		서울시 일반장애인	
	빈도(명)	백분율(%)	분류	백분율(%)
최상층	0	.0	상층	0.4
상층	0	.0	중상층	21.3
중간층	17	8.2	중하층	40.6
하층	25	12.0	하상층	19.9
최하층	165	79.3	하하층	40.6
무응답	1	.5		
합	208	100.0		100.0

주 : 남부복지관자료와 비교.

<표 6-3>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의 나이에 따른 생활수준 인식

분류	무응답	중간층	하층	최하층	합
20 - 29세		50.0		50.0	4(1.8)
30 - 39세		15.2	23.9	60.9	46(22.1)
40 - 49세	1.4	8.2	12.3	78.1	73(35.1)
50 - 59세		3.3	5.0	91.7	60(28.8)
60 - 69세				100.0	17(8.2)
70 - 79세			14.3	85.7	7(3.4)
무응답			100.0		1(0.5)
합(명)	1	17	25	165	208
%	.5	8.2	12.0	79.3	100.0

2. 생활수준인식

현재 '자신의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들은 최상층과 상층에는 한 사람도 응답하지 않았고, 중간층 8.2%, 하층 12.0%, 최하층 79.3%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 생활보호 장애인들의 현실과 생활수준에 대한 의식이 일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92년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조사에서는 자신이 중하층이라는 응답이 40.6%, 중상층이 21.3%로 비교적 자신의 생활수준을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생활보호 장애인과는 대조된다(<표 6-2> 참조).

한편 <표 6-3>을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최하층으로 응답한 사람이 많아, 노년층이 빈곤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20대의 응답자 중 50.0%는 자신이 중상층이라고 응답하여 다른 나이 대와는 생활수준의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3. 생활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이 생활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집 마련'(27.9%)이었다. 다음으로 '직장마련'이 23.6%, '장애의 치료와 재활'이 16.3%, '자녀양육 및 교육' 11.1%, '임금인상' 7.2%, '직업훈련' 1.0%, '가정문제 상담 및 상의' 0.5% 순으로 나타났다(<표 6-4>).

주거형태에 따라 생활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비교해 보면 자기집, 전세, 영구임대아파트 등 주거가 비교적 안정적인 사람들은 직장 마련과 임금인상을, 반면에 월세, 무료임대, 친척·친구집인 사람은 내집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부록표 34> 참조)

직업과 생활개선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직업이 있는 사람중에 생활개선을 위해 직장 마련을 꼽은 사람도 많아 보다 안정적인 직장 마련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마련을 희망하는 사람중에 무직자는 40.4%나 된다. 단순서비스업, 생산기능직, 비숙련 단순노동 종사자는 임금인상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내집마련, 장애의 치료와 재활, 자녀양육 및 교육은 거의 모두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부록표 34> 참조)

<표 6-5>은 보사연 서울자료에서 일반장애인 가구주가 현재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이다. 일반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39.5%가 생활비보조를, 30.2%가 치료를 지적했다. 본 조사와 질문내용이 달라 생활보호장애인과 일반장애인의 요구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본 조사의 주택마련, 임금인상, 생계비 지원(기타에 많이 응답)과 보사연의 생활비보조에 높은 응답을 한

<표 6-4>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의 생활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분류	빈도(명)	백분율(%)
직장마련	49	24.0
입급인상	15	6.7
내집마련	58	27.9
장애의 치료와 재활	34	16.3
자녀양육 및 교육	23	11.1
가정문제 상담 및 상의	1	.5
직업훈련	2	1.0
기타	19	9.1
무응답	7	3.4
합	208	100.0

<표 6-5> 일반장애인 가구주의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한것

분류	빈도(명)	백분율(%)
생활비보조	132	39.5
취업	23	6.9
직업훈련	6	1.8
치료	101	30.2
검사	39	11.7
기타	21	6.3
미상	12	3.6
합	334	100.0

자료 : 보사연(서울).

것은 생활보호장애인과 일반 장애인 모두 경제적인 문제해결이 가장 시급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취업에 대해서 생활보호 장애인은 24.0%로 일반 장애인의 6.9%보다 훨씬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반면에 장애의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 생활보호 장애인은 16.3%인데 일반 장애인은 30.2%로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녀 양육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정의 자녀양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를

<표 6-6> 생활보호대상가구주의 자녀양육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 여부
단위 : 명(%)

분류	무응답	매우필요	필요	그저그렇다	불필요	합(%)
가정봉사원	46(22.1)	57(27.4)	47(22.6)	33(15.9)	25(12.0)	208(100)
무료탁아소	42(20.2)	76(36.5)	45(21.6)	25(12.0)	21(9.6)	208(100)

돌봐 줄 '가정 봉사원과 무료탁아소 설치가 얼마나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매우 필요하다'에 각각 27.6%, 36.7%가 응답해 자녀양육서비스에 대해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가정봉사원보다 무료탁아소 설치 및 확대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응답은 각각 21.9%, 20.0%로 비교적 높게 나왔는데, 이는 응답자중 자녀가 없거나, 이미 성장한 경우가 많아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표 6-6> 참조).

5. 노후 대책

장애와 빈곤으로 현재 상태가 매우 불안한 생활보호 장애인들이 미래, 즉 노후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생활보호 장애인들이 노후대책을 세울 여유가 없거나(50.0%) 생각해 본 적이 없는(30.3%)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대책을 세우고 있는 이들의 경우도 노후보장보험 가입이 2.4%에 그치고 있고, 무료시설 입소 10.1%, 자녀나 친지들에 의존 5.3%, 기도원이나 절 입소는 1.9% 등을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비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참조).

<표 6-8>에서 보면 20대의 50.0%는 노후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했으며, 30대의 52.2%, 40대의 52.1%, 50대의 52.7%, 60대의 42.1%는 노후대책을 세울 여유가 없다고 했다. 노후보장보험은 20대 중 25.0%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그외 정부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시설은 특히 60대의 29.4%가 이에 응답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보호유형별로 보면 노후보장 보험을 비롯한 각 대책에 거택보호자의 응답률이 더 높아 노후에 대해서 거택보호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활보호자보다 더 생계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가 노후에 대해 더 불안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생계보호대상 장애인들의 노후는 아직 본인에 의해 준비되기에는 힘겨운 일으므로,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 6-7〉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노후대책

분류	빈도(명)	백분율(%)
노후보장보험에 가입	5	2.4
자녀나 친지들에 의존	11	5.3
무료시설 입소	21	10.1
기도원, 절에 들어가겠다	4	1.9
노후대책 세울 여유없다	104	50.0
생각해본 적 없다	63	30.3
합	208	100.0

〈표 6-8〉 나이, 생활보호유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노후대책

분류	노후보장 보험에 가입	자녀나 친지에 의존	무료 시설 입소	기도원, 절을 입소	노후대책 을 세울 여유없다	생각해 본 적 없다	합
20 - 29세	25.0				25.0	50.0	4(1.9)
30 - 39세	4.3	4.3	4.3	6.5	52.2	28.3	46(22.1)
40 - 49세	2.7	4.1	8.2	1.4	52.1	31.5	73(25.1)
50 - 59세		6.7	10.0		51.7	31.7	60(28.8)
60 - 69세			29.4		41.2	29.4	17(8.2)
70 - 79세		28.6	14.3		42.9	14.3	7(3.4)
무응답			100.0				1(0.5)
거택보호(1종)	3.2	6.5	25.8	3.2	32.3	29.0	62(29.8)
자활보호(2종)	2.3	5.3	3.0	1.5	60.2	27.8	133(63.9)
무응답			7.7		30.8	61.5	13(6.3)
합(명)	5	11	21	4	104	63	208
%	2.4	5.3	10.1	1.9	50.0	30.3	100.0

6. 빈곤의 원인

생활보호 대상 장애인 가구주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빈곤의 원인은 61.5%가 '장애 때문'이었다. 그 밖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5.3%, '배운게 없어서', '갑자기 병이 나거나 사고를 당해서'가 각각 4.8%, '직장이 없어서'가 4.3%로 응답됐다(〈표 6-9〉 참조). 빈곤의 원인이 '장애 때문'이라는 것은 성별, 나이, 장애유형 및 정도, 생활보호 유형에 상관 없이 높은 응답률을

〈표 6-9〉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가 생각하는 빈곤의 원인

분류	빈도(명)	백분율(%)
장애 때문에	128	61.5
배운게 없어서	10	4.8
직장이없어서	9	4.3
사업실패 때문에	3	1.4
자녀교육 때문에	3	1.4
유산을물려받지못해	9	4.3
병이나사고를당해서	10	4.8
정당한 댓가를받아서	11	5.3
정부의정책이잘못되서	5	2.4
기타	20	9.6
합	208	100.0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애는 교육, 취업,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응답자들 다수가 빈곤의 원인을 장애 때문으로 답한 것은 장애 그 자체보다 장애로 인해 결과되는 것들을 포함한 총체적인 대답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생활보호 장애인들의 빈곤원인은 개인이 가진 장애 -노동능력의 상실- 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빈곤을 유발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다음 〈표 6-10〉을 보면 나이가 높을수록 빈곤의 원인이 장애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으며, 40-49세 중에는 '열심히 일해도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에 8.2%가, 60-69세 중에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서'에 5.9%가 대답해 다른 나이에 비해 응답률이 높다. 생활보호유형별로 보면 거택보호중 72.6%가, 자활보호중 57.9%가 장애 때문에 빈곤하다고 응답해 거택보호가 빈곤의 원인 중에 장애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빈곤극복방안

빈곤을 극복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3.2%, '정부가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30.3%,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14.9%, '단체를 만들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1.9%순으로 조사 되었고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 날 길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

〈표 6-10〉 나이와 생활보호유형에 따라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가 생각하는 빈곤의 원인

분류	장애 때문에	배운게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사업 실패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유산을 물려받지 못해서	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기타	합
무응답	100.0									50.0	1(0.5)
20 - 29세	50.0	4.3	2.2	4.3	4.3	2.2	4.3	6.5		8.7	4(1.9)
30 - 39세	63.0	5.5	5.5	1.4	1.4	5.5	5.5	8.2	4.1	9.6	46(22.1)
40 - 49세	53.4	6.7	5.0			5.0	5.0	1.7	1.7	10.0	73(35.1)
50 - 59세	65.0					5.9	5.9	5.9	5.9		60(28.8)
60 - 69세	70.6										17(8.2)
70 - 79세	85.7		14.3								7(3.4)
무응답	46.2	7.7	7.7			15.4			7.7	15.4	13(6.3%)
거택보호(1종)	72.6	3.2	1.6			4.8	4.8	1.6	3.2	8.1	62(29.8)
자활보호(2종)	57.9	5.3	5.3	2.3	2.3	3.0	5.3	7.5	1.5	9.8	133(63.9)
합(명)	128	10	9	3	3	9	10	11	5	20	208
%	61.5	4.8	4.3	1.4	1.4	4.3	4.8	5.3	2.4	9.6	100.0

도 9.6%나 되었다(〈표 6-11〉 참조).

빈곤 극복에 대한 생각은 크게 개인적 노력, 당사자들의 조직적 노력, 정부나 사회의 노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조사에서 개인적 노력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들이 빈곤의 원인과 책임이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극복 역시 개인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사회와 정부의 노력을 합한 것이 개인적 노력보다 응답이 많아 빈곤해결에 대한 사회·국가적 책임에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당사자들의 조직적 노력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여 장애인운동이나 빈민 운동과 같이 동일한 문제를 가진 당사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어 실천적인 활동을 하는데까지는 아직 생각이 미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 날 길이 없다'와 '잘 모르겠다'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데, 이에 응답한 사람들은 현실과 빈곤 극복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빈곤의 원인이 빈곤을 극복하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빈곤의 원인과 빈곤극복을 교차하였다. 〈표 6-12〉를 보면 '장애'를 빈곤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중 많은 사람이 '정부의 혜택'을 극복방안으로, '배운게 없어서' 빈곤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빈곤의 극복방안으로 많이 응답했다. 빈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표 6-11〉 생활보호 장애인가구주의 빈곤극복방안

분류	빈도(명)	백분율(%)
자신의 힘으로 노력	69	33.2
정부의 혜택	63	30.3
단체를만들어권리주장	4	1.9
사회가더많은관심가져	31	14.9
노력해도불가능	20	9.6
잘 모르겠다	16	7.7
기타	4	1.9
무응답	1	.5
합	208	100.0

〈표 6-12〉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이 생각하는 빈곤원인에 따른 빈곤극복 방안

분류	무응답	자신의 힘으로 잘살수 있도록노력	정부가 더많은 혜택을 주어야	단체를 만들어 권리를 주장	사회가 더많은 관심을 가져야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길없다	잘 모르 겠다	기타	합
장애때문에 배운게 없어서	.8	30.5	34.4	3.1	18.0	6.3	7.0		128(61.5)
직장이 없어서		60.0	10.0		10.0	20.0			10(4.8)
사업실패 때문에		33.3	22.2		11.1	11.1	22.2		9(4.3)
자녀교육 때문에		33.3	33.3		66.7		33.3		3(1.4)
유산을 물려 받지 못해서		33.3	33.3			11.1	11.1		3(1.4)
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44.4	33.3		10.0	20.0	11.1		9(4.3)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해서		50.0	20.0			36.4	18.2		10(4.8)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서		9.1	36.4		20.0	20.0	20.0		11(5.3)
기타		20.0	20.0		10.0	5.0	20.0	20.0	5(2.4)
		40.0	25.0		10.0				20(9.6)
합(명)	1	69	63	4	31	20	16	4	208
%	.5	33.2	30.3	1.9	14.9	9.6	7.7	1.9	100.0

8. 앞으로의 생활수준에 대한 전망

앞으로의 생활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많이 나아질 것이다' 7.2%, '조금 나아질 것이다' 35.6%, '변함 없을 것이다' 26.6%, '조금 나빠질 것이다' 10.6%, '많이 나빠질 것이다' 7.2%로 응답해 자신의 생활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표 6-13〉 참조).

〈표 6-13〉 생활보호 장애인의 앞으로의 생활수준에 대한 전망

분류	빈도(명)	백분율(%)
많이 나아질 것이다	15	7.2
조금 나아질 것이다	74	35.6
변함없을 것이다	54	26.0
조금 나빠질 것이다	22	10.6
많이 나빠질 것이다	15	7.2
잘 모르겠다	28	13.5
합	208	100.0

〈표 6-14〉 나이와 생활보호유형에 따른 이후 생활수준에 대한 전망

분류	많이 나아질 것이다	조금 나아질 것이다	변함없을 것이다	조금 나빠질 것이다	많이 나빠질 것이다	잘 모르 겠다	합
20 - 29세		75.0				25.0	4(1.9)
30 - 39세	6.5	52.2	17.4	8.7		15.2	46(22.1)
40 - 49세	8.2	32.9	27.4	8.2	11.0	12.3	73(35.1)
50 - 59세	10.0	28.3	31.7	15.0	3.3	11.7	60(28.8)
60 - 69세		23.5	11.8	11.8	29.4	23.5	17(8.2)
70 - 79세		28.6	57.1	14.3			7(3.4)
무응답			100.0				1(0.5)
거택보호(1종)		32.3	27.4	12.9	11.3	16.1	62(29.8)
자활보호(2종)	9.8	36.1	26.3	9.8	6.0	12.0	133(63.9)
무응답	15.4	46.2	15.4	7.7		15.4	13(6.3)
합(명)	15	74	54	22	15	28	208
%	7.2	35.6	26.0	10.6	7.2	13.5	100.0

덧붙여 <표 6-14>를 보면 나이가 적을수록 앞으로 자신의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 하고 있는데, 20대중 75.0%, 30대중 58.7%, 40대중 41.1%가 50대중 38.3%가 앞으로 많이 또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자활보호자중에는 '나아질 것이다'에, 거택보호자중에는 '변함없을 것이다'와 '나빠질 것이다'에 더 많이 응답해 거택보호자보다는 자활보호자들이 자신의 생활을 더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단체나 정당 가입 및 활동

빈곤한 가족 및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나 정당의 가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다수의 생활보호 장애인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5>를 보면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동' 27.4%, '가입은 하나 적극적인 활동은 어려움' 29.3%, '가입은 못하나 뒤에서 적극지지' 13.0%로 응답해 단체나 정당의 존재를 상당수가 인정하고 있으며, '가입하거나 활동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접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가입은 하나 적극적인 활동은 어려울 것 같다'는 대답이 더 많이 나왔다.

<표 6-16>은 나이별 생활보호유형별, 단체활동정도별, 빈곤극복방법별로 단체나 정당가입의 여부를 비교한 것이다. 먼저 나이별로 보면 50대의 42.2%가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응답해 다른 연령보다 단체활동에 적극성을 보였다. 또한 일상활동중 단체활동을 얼마나 하는가와 비교해 보면 '자주한다'고 응답한 사람

<표 6-15>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단체나 정당가입 및 활동 여부

분류	빈도(명)	백분율(%)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1)	57	27.4
가입은 하나 적극적활동은 어려울 것 같다(2)	61	29.3
가입은 못하나 뒤에서 적극 지지하겠다(3)	27	13.0
가입, 활동할 필요를 못느낀다(4)	16	7.7
단체나 정당의 활동경과를 보고 결정하겠다(5)	10	4.8
잘 모르겠다(6)	27	13.0
기타(7)	9	4.3
무응답(8)	1	.5
합	208	100.0

<표 6-16> 나이, 일상활동중 단체활동 정도, 생활보호유형, 빈곤극복 방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단체.정당가입 여부 및 활동

분류	(1)가입 활동	(2)가입 비활동	(3)바가입 지지	(4)필요 없다	(5)경과 보고 결정	(6)잘 모르겠다	(7)기타	(8) 무응답	합
20 - 29세		50.0			50.0				4(1.8)
30 - 39세	23.9	37.0	13.0	8.7	2.2	10.9	2.2	2.2	46(22.1)
40 - 49세	26.0	32.9	9.6	6.8	6.8	16.4	1.4		73(35.1)
50 - 59세	40.0	13.3	15.0	10.0	1.7	13.3	6.7		60(28.8)
60 - 69세	11.8	47.1	11.8	5.9	5.9	5.9	11.8		17(8.2)
70 - 79세	14.3	14.3	42.9			14.3	14.3		7(3.4)
무응답		100.0							1(0.5)
자주한다	41.2	17.6	5.9	23.5	5.9		5.9		17(8.2)
가입한다	40.0	30.0	15.0	5.0		5.0		5.0	20(9.6)
대체로 못한다	25.0	33.3	16.7	8.3	8.3	8.3			12(5.8)
거의 못한다	22.2	33.3	19.4	2.8	8.3	5.6	8.3		36(17.3)
전혀 못한다	25.4	30.5	11.0	7.6	4.2	17.8	3.4		118(56.7)
무응답	20.0		20.0			40.0	20.0		5(2.4)
거택보호(1종)	27.4	27.4	12.9	4.8	6.5	16.1	3.2	1.6	62(29.6)
자활보호(2종)	28.6	30.1	12.8	7.5	4.5	11.3	5.3		133(63.9)
무응답	15.4	30.8	15.4	23.1		15.4			13(6.3)
자신의 힘으로	30.4	30.4	11.6	7.2	7.2	8.7	4.3		63(30.2)
정부의 혜택	28.6	33.3	11.1	7.9	4.8	7.9	4.8	1.6	63(30.3)
단체를 만들어	50.0	25.0		25.0					4(1.9)
사회적 노력	29.0	32.3	16.1	3.2		19.4			31(14.9)
노력해도 불가능	20.0	25.0	25.0	10.0		15.0	5.0		20(9.6)
잘 모르겠다	12.5	12.5	6.3	12.5	12.5	37.5	6.3		16(7.7)
기타	25.0	25.0	25.0			25.0			4(1.8)
무응답							100.0		1(0.5)
합(명)	57	61	27	16	10	27	9	1	208
%	27.4	29.3	13.0	7.7	4.8	13.0	4.3	.5	100.0

중 41.2%와 '가입한다'고 응답한 사람중 40.0%는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응답을 해서 일상적인 단체활동 정도와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단체활동을 '대체로 못한다', '거의 못한다', '전혀 못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 30% 이상이 '가입은 하나 적극적인 활동은 어려울 것 같다'고 응답해 현재 단체활동을 못하는 사람도 단체나 정당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단체활동을 자주하는 사람 중에 23.5%가 '가입하거나 활동할 필요를 못느낀다'고 응답했다.

생활보호유형별로 보면 거택보호중에 27.4%, 자활보호중에 28.6%가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응답했으며, '가입은 하나 적극적인 활동은 어렵다'가 각각 27.4%, 30.1%를 보이고 있다. 단체나 정당 가입여부에 대해서는 거택, 자활보호가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빈곤을 극복하는 방법과 비교를 해보면 '자신의 힘으로 잘 살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중에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 '가입은 하나 적극적인 활동은 어려울 것 같다'에 각각 30.4%씩 응답해 단체나 정당 활동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단체를 만들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중에는 50.0%가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응답했다.

10. 정치적 안정, 장애인복지, 빈부격차에 대한 전망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들의 정치의식을 묻는 질문으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치적인 안정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표 6-17>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4.9%가 '매우 안정될 것', 40.4%가 '다소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해 김영삼 정부에 대한 지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조사는 94년 4월 이전에 조사된 것으로 김영삼 정부의 집권초기였고, 조계종 사태, 이회창 총리 경질,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의혹 사건 등 김영삼정부의 지지도를 낮추는 요인이 작용하기 전인 일반적으로 김영삼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 때 조사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치적 안정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만으로 빈민장애인이 특별히 김영삼 정부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한편 단체나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적 안정에 대한 견해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단체나 정당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표 6-17> 이후 정치적 안정에 대한 전망

분류	빈도(명)	백분율(%)
과거에 비해 매우 안정될 것이다	31	14.9
과거에 비해 다소 안정될 것이다	84	40.4
과거와 비슷할 것이다	47	22.6
다소 나빠질 것이다	12	5.8
나빠질 것이다	3	1.4
모르겠다	24	11.5
기타	2	1.0
무응답	5	2.4
합	208	100.0

<표 6-18>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망

분류	빈도(명)	백분율(%)
매우 잘 이루어 질 것이다	18	8.7
다소 이루어 질 것이다	78	37.5
비슷할 것이다	71	34.1
다소 나빠질 것이다	9	4.3
매우 나빠질 것이다	6	2.9
모르겠다	22	10.6
기타	2	1.0
무응답	2	1.0
합	208	100.0

사람들은 다소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부록표 36> 참조)

또한 빈민장애인들이 생각하는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기대와 평가는 '과거에 비해 잘 이루어질 것이다'가 8.7%, '다소 이루어 질 것이다' 37.5%, '과거와 비슷할 것이다' 34.1%, '다소 나빠질 것이다' 4.3%, '매우 나빠질 것이다' 2.9%로 응답해 과거에 비해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변함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비교적 높아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에는 다소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18> 참조).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사회복지 또는 장애인복지 향상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별로 변한 것이 없고, 특히 김영삼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면서 사회복지분야에의 투자와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빈민이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과거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다음, '김영삼 정부 이후 빈부격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표 6-19>에서 보듯이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들은 '과거에 비해 매우 줄어들 것이다' 4.3%, '과거에 비해 다소 줄어들 것이다' 23.1%, '과거와 비슷할 것이다' 30.3%, '과거보다 다소 심해질 것이다' 17.3%, '과거보다 매우 심해질 것이다' 13.0%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 결과는 생활보호 장애인 대다수가 김영삼 정부하에서 정치적 안정이나 장애인복지에 비해 빈부격차 해소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빈곤을 극복하는 방법과 빈부격차에 대한 생각을 비교해 보면(<부록표 38> 참조) '자신의 힘으로 잘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중 8.7%는 '매우 줄

〈표 6-19〉 빈부격차 해소에 대한 전망

분류	빈도(명)	백분율(%)
매우 줄어들 것이다	9	4.3
다소 줄어들 것이다	48	23.1
비슷할 것이다	63	30.3
다소 심해질 것이다	36	17.3
매우 심해질 것이다	27	13.0
모르겠다	21	10.1
기타	2	1.0
무응답	2	1.0
합	208	100.0

어늘 것이다', 15.9%는 '매우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응답해 빈부격차 해소에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다' 라고 응답한 사람중 '매우 줄어들 것' 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0%, '매우 심해질 것이다' 는 30.0%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망은 빈부격차에도 그대로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장애인복지가 '매우 잘 이루어 질 것' 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빈부격차도 '매우 줄어들 것이다' 에, '비슷할 것이다' 는 역시 '비슷할 것이다' 에, '매우나빠질 것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매우 심해질 것이다' 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삶 속에서 장애인복지의 발전과 빈부격차의 해소를 같은 맥락에서 파악,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III.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실태 조사에 관한 대책안

1. 서론

지난 60년대 이후 '선성장 후복지' 의 논리속에 가속화되어온 경제성장은 '富益富 貧益貧' 현상의 심화속에 농촌의 피폐화와 더불어 도시빈민층을 형성해 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빈민장애인들은 이러한 도시빈민 속에서도 가장 그늘진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적·외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회, 경제적 환경의 열악함과 노동으로부터의 철저한 소외, 그 토대위에서 다시 가난이 대물림되는 '빈곤의 악순환' 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달에 연극, 영화, 운동경기관람 등의 문화생활을 95%이상이 '전혀 또는 거의 하지못한다' 고 응답한 것은 이 사회에서의 그들의 삶을 단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빈민장애인들은 정부의 모순투성이적인 장애인복지정책과 미지근한 생활보호정책속에서 그 '이중적 억압' 의 고통을 떠안은 채,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빈곤 극복이 가능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취업에서 부터 주택, 교육, 의료,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빈민장애인들이 빈곤의 질곡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 땅의 소외받는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혜택이 아닌 당연한 권리이다. 현정부에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빈민장애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실있는 복지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이 대책안은 설문 응답을 근거로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이 가능한 항목을 제시한 것이다.

2. 본론

1. 생활보호대상 장애인들은 41.4%가 만6세 이전에 장애를 입었으며, 학력도 중졸 이하가 75.9%나 차지했다. 이는 어려서 장애를 입었을 경우, 학력이 낮을 경우 빈곤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일반가정에 대한 모자보건법의 강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의 실시, 산업재해·교통사고 대책마련 등을 통해 장애예방에 힘써야한다.

또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증설, 무상교육 실시 및 일반학교(대학 포함)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2.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의 경우 가구원의 수가 일반 생보자보다 많았지만 수입이 있는 가족구성원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가구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가 일반 장애인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장애인가구에 비해 이혼율도 월등히 높아 불안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 조사대상자중 약 1/3 가량의 가구에 가구주 본인을 제외한 장애인이 1명이상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한 장애인이 일상생활, 재활치료 등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일반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함을 감안해 정부는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살아가고 있는 가구에 장애인 가족수당 등을 신설, 현재 중증 생보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수당(분기별 6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한 가정의 중도장애인이 발생하는 것은 가족구성원들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주며,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중 이혼가정이 많은 한가지 원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 각 구마다 건립되어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중도장애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부부관계, 가족문제 등을 상담할수 있는 상담소 개설,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등의 중도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정부와 민간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도장애인 가구외에도 편부, 편모 가구 등 가족관계가 불안정한 가구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한다.

3.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무직자가 42.8%, 취로사업 등의 비숙련 단순노동이 20.2%였고 15.4%만이 한달에 20일 이상 일하는 등 '노동으로부터의 소외'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가구주 본인의 한달 평균 수입은 40만원미만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1> 안정된 취업이나 자영업은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의 자활에 핵심적인 사안이다. 우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첫째,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실시되고 있는 취로사업의 경우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일거리)을 확대해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을 배정하고, 근로일수를 늘려야 한다. 특히 장애인가구의 경우 가

구주가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로사업 참여 대상을 가구원까지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지하철 가판대 등에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중 취업이 가능한 중증, 부녀자,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대출을 원하는 장애인에게는 영세자영업 정도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액수의 용자제도도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20-30대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주의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및 훈련직종을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훈련직종의 경우 현재 장애인을 위한 직종이 목공, 금은세공, 전자조립 등 낙후된 형편이므로 사무자동화, 컴퓨터 속기사 등 취업이 유망한 첨단 직종을 연구해 시행하여야 한다.

<2> 자활을 위한 안정적인 방안으로는 각 지역단위 관공서 등의 일반소비재(예: 휴지, 화일박스 등)를 생활보호장애인들이 모여 생산, 납품하는 자립작업장을 개설, 운영해야 한다.

4. 시행 4년제인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경우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절반 이상이 이 법이 시행되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이용한 적이 있는 장애인은 3.4%에 불과해 생활보호장애인들에게는 장고법이 특히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1> 현재 개정작업중인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중증장애인과 빈민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조항 형식으로 삽입해야 한다.

<2> 아직까지도 장애인 대다수가 장고법의 시행을 모르고 있는 실정으므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고법의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작년말까지 거두어들이는 420억 가량의 부담금중 일부를 TV 공익광고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본 설문조사의 내용중 취업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이 없다'는 응답이 32.7%를 차지했으며, 89.4%가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개발의 연구작업과 함께 직업훈련원을 대폭 늘려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의 경우 가구전체의 월수입이 40만원미만인 경우가 75%, 월지출이 30만원미만인 경우가 50% 이상으로 나타나 서울 거주 일반장애인가구나 일반빈민가구에 비해서 더 열악하다. 또한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46.6%로 가장 많았으나 자기집소유자는 0.5%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가구가 두칸 이하의 방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 생활보호대상 장애인가구의 저소득에 따른 지출의 부담을 줄이고 자활을 돕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 상업고등학교까지만 지원되는 자녀교육비를 인문계 고교는 물론 대학교 졸업 때까지 전액 확대 지원해 저학력에 의해 나타나는 빈곤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둘째, 일반 가정에서 지출의 비중이 극히 적은 교통비가 생활보호 장애인 가구에서는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들은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보다 택시 등을 타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들의 승용차 보유를 허용해야 하며, 특히 중증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는 차량구입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셋째, 전화세, 수도료, 전기세, TV시청료 등의 세금 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택시 밀리, 앞으로 시행될 케이블 TV 수신료 등의 요금도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2>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도시내 슬럼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영구임대아파트 또는 달동네 등의 빈곤층 밀집지역에 문화공간, 생활체육 공간 등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현재 저소득층이 입주하고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를 가족수, 장애유형 등에 따라 평형, 방수 등을 늘려 분양하는 개선책을 세워야 한다.

셋째, 현재 주거안정대책으로 서울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전세자금 5백만원이하 금액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전국 각 지역의 지가(地價)에 맞는 현실적인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일반 공공주택 분양시 일정한 수를 저소득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확대, 강화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민간주택건설업체의 장애인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량의 주택을 장애인에게 분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영세 장애인이 주택을 구입, 양도, 보유할 때 부담하는 관련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장애등급별로 차등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해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6. 조사대상자들의 절반 이상이 병원을 '자주 또는 가끔 이용한다'고 밝혀 상당히 높은 이용도를 보였다. 빈곤한 장애인은 열악한 생활 환경속에서 건강이나, 재활치료 등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강한 의료적인 욕구를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첫째, 생활보호대상 장애인들에게는 현재 일반진료 외에는 해당되지 않는 X-레이, 내시경, 근전도 검사등 특수진료의 의료보호 혜택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의료재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 보장구의 경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조사대상자들이 지적한 보장구 지급의 액수가 적은 점, 재고부까지의 기간이 길다는 점,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검진기관이 멀다는 점 등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생보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재활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7. 생활보호대상 장애인가구는 현재 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에 대해 절반가량이 모르고 있었으며, 17.8%만이 이용한 적이 있었다. 또한 응답자 대부분이 자신의 노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거택보호자가 더 노후를 불안하게 느끼고 있었다. 한편 자녀양육을 위해 무료 탁아소를 설치하거나 가정봉사원을 파견을 희망하고 있었다.

<1>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복지시설에서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취업, 법률 등을 위한 상담소 개설이나 각종 의료 서비스 제공, 무료 탁아방 개설, 컴퓨터 강좌, 수지침교실, 한글반 야학, 생활체육 소모임 구성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빈민장애인 가구에 가정봉사원으로 파견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특히 복지시설의 서비스는 빈민장애인의 재활 등을 위해 접근이 쉽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장애인이 모르거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 복지관에서는 빈민장애인에 대한 지역 홍보를 강화하고 순회버스를 운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노인층은 사회적, 경제적 소외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계층으로 그 대책 또한 절실하다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이 노후대책을 세울 여유가 없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가구주의 노령층 중 단독세대의 경우 지역마다 무료시설을 건립해 원하는 빈민장애노인을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또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경우 노인세대를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 노령수당 등을 신설해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특히 생활환경이 어려울수록 노후에 대해 더욱 불안하게 느끼고 있어 이들에 대한 노후안정 대책의 구체적인 정책제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8. 생활보호자가 된 기간이 5년이상자가 일반생보자는 32.2%인 반면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은 절반이 넘는 52.4%나 되어 장애를 입을 경우 빈곤하게 사는 기간이 훨씬 길며 쉽게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랜기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들이 근본적으로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자활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특별조치 등을 통해 일정기간(5년가량)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

첫째, 취업 등 자활이 가능한 이들에게는 지하철 가판대, 공공기관 매점 등을 우선적으로 분양해주거나, 취업 알선, 또는 자영업 등 자활이 가능한 현실적 액수의 금액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어야 한다.

둘째, 취업이 불가능한 이들에게는 현재의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월 65,000가량의 생계지원금을 대폭 상향조정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보조를 해주어야 한다.

3. 결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와 존엄성을 가진다. 도시빈민의 문제, 장애인의 문제는 경제성장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로 한 개인의 책임이나 가족의 고통과 희생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20년 이상의 기간을 생활보호자로 살아왔던 장애인에게 '경제성장' '복지사회 건설'을 외치던 역대 정권은 어떠한 책임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

았다.

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사회에 살아가는 빈민장애인들이 열악한 경제적 토대 위에서 취업, 의료, 교육, 노후대책 등 생활전반에 걸쳐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들의 자활의 가능성은 거의 전무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빈민장애인들이 희망을 갖고 인간다운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우선적인 빈민장애인 복지정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사회·경제적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가구를 위해 '(가칭) 빈민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2. 민간차원에서는 각 지역마다 건립되어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빈민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상담소 설치, 강좌 개설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적극적으로 홍보해 빈민장애인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정부와 민간의 노력과 더불어 빈민장애인 스스로도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 있게 실행되는지는 빈민장애인의 조직된 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의 주민회, 자치회 등을 꾸려 정보교환 혹은 지역 압력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명순

1985 도시빈민연구II 빈민여성 빈민아동, 아침

강하상

1988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정책, 경북대 행정학 석사논문

국토개발연구원

1989 도시빈곤층 대책에 관한 연구

길태근

1991 한국도시빈민의 형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 사회학 박사논문

김만두, 한혜경

1993 한국사회복지개론, 홍익사

까스텔외

1986 도시지역운동연구, 세계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1992 서울시장애인복지수요실태조사보고서

대한주택공사

1989 영세민 주거실태 및 의식조사연구

도시빈민연구소

1989 도시빈민지역운동론, 토론회자료집

1991 굴레를 깨고 일어서는 사람들, 빈민지역운동 사례집

1992a 도시빈민지역운동론III

1992b 도시빈민지역운동대토론회 자료집

보건사회부

1993 재활과장애인복지정책 발전과정과 현황, 보도자료

1993 '93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993 신정부에 바라는 사회복지정책요구안, 자료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심포지움

1985 한국의 의료실태, 한울

서울시

1989 서울시 저소득층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1990 서울시 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조사연구

1992 장애인복지법령집

오승환

1989 도시빈민의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복지

이경미

1993 자본주의와 장애인 차별: 한국노동시장에서의 차별기제와 양상, 한양대 사회학 석사논문

이운상

1990 도시빈민의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사업 석사논문

전병성

1993 도시빈민층의 의식구조와 사회적 행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전용호

1994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정동익

1985 도시빈민연구, 아침

조흥식

1989 "한국도시빈민연구의 현황과 사회복지학적 과제," 사회복지연구 창간호
 1990 "한국 도시빈민의 사회적 욕구," 계간 아산 47호
 1991a 도시민곤가족의 사회복지사업욕구와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청주시 2개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호
 1991b 도시빈곤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사업실천에 관한 연구: 생태체계적 관점의 문제조사도구 개발과 적용을 중심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

조희연

1993 계급과 빈곤, 한울아카데미

최원규

1989 "도시빈민의 형성과정--노동자계급의 빈민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14호

테레사 하이터

1987 빈곤의 정치경제학, 비봉출판사

통계청

1993a 도시가계연보 1992
 1993b 한국의 사회지표 1992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83 한국의 가난한 여성에 관한 연구, 민중사
 1986 지역운동과 지역실태, 민중사
 1990 90년대 한국사회와 변혁운동, 민중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a 1990년도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1992b 사회복지 장기발전계획

1993 장애인의료재활서비스 개선방안연구

한국사회학회편

1991 현대한국사회문제,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1993 빈곤과 장애, 토론회 자료집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2 장애자복지종합대책의 시행·평가

한국지체장애자협회

1993 신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자료집

부록

- I. 부록표
- II. 설문지
- III. 직업분류표

I. 부록표

<부록표 1>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주의 건강상태

단위 : 명

분류	생활보호 유형	건강	장애인			폐질	기타	합
			소합	신체	정신			
전국 559,504	거택 자활	77,579 162,974	27,303 33,378	20,177 26,828	7,126 6,550	29,494 50,346	39,361 139,069	173,737 385,767
서울 42,536	거택 자활	4,480 14,145	1,417 3,201	1,104 2,719	313 482	1,470 4,598	4,414 8,811	11,781 30,755

자료 : 보사부, '93생활보호대상자현황분석

<부록표 2>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배우자 나이

분류	빈도(명)	백분율(%)
20-29	10	6.9
30-39	49	33.8
40-49	43	29.7
50-59	29	20.0
60-69	10	6.9
70-79	2	1.4
무응답	2	1.4
합	145	100.0

<부록표 3> 생활보호대상장애인 가구주의 나이에 따른 장애유형 분포

분류	지체	시각	청각.언어	기타	무응답	합
20-29세	100.0					4(1.9)
30-39세	65.2	2.2	19.6	13.0		46(22.1)
40-49세	74.0	5.5	8.2	12.3		73(35.1)
50-59세	70.0	10.0	8.3	10.0	1.7	60(28.8)
60-69세	94.1	5.9				17(8.2)
70-79세	85.7			14.3		7(3.4)
무응답			100.0			1(.5)
합(명)	152	12	21	22	1	208
%	73.1	5.8	10.1	10.6	.5	100.0

<부록표 4>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배우자 학력분류

분류	빈도(명)	백분율(%)
무학	24	16.6
국교 중퇴	8	5.5
국졸	54	37.2
중학교 중퇴	3	2.1
중학교졸	33	22.8
고등학교중퇴	2	1.4
고등학교졸	18	12.4
대학(전문대)중퇴	1	.7
대졸(전문대)이상	2	1.4
합	145	100.0

<부록표 5> 생활보호대상 가구주의 장애유형에 따른 생활보호형태

분류	무응답	거택보호 (1종)		자활보호 (2종)		합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지체장애	7.2	28.9	63.8	152(73.1)		
시각장애		33.3	66.7	12(5.8)		
청각.언어장애	9.5	23.8	66.7	21(10.1)		
기타		40.9	59.1	22(10.6)		
무응답			100.0	1(.5)		
합(명)	13	62	133	208		
%	6.3	29.8	63.9	100.0		

<부록표 6>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재산소유현황 : 동산과 부동산

분류	동산		부동산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없다	58	27.9	120	57.7
100만원 미만	60	28.8	37	17.8
200만원 미만	32	15.4	8	3.8
300만원 미만	4	1.9	1	.5
400만원 미만	13	6.3	6	2.9
700만원 미만	17	8.2	5	2.4
1000만원 미만	8	3.8	5	2.4
1,000만원 이상	10	4.8	5	2.4
무응답	6	2.9	21	10.1
합	208	100.0	208	100.0

〈부록표 7〉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장애유형에 따른 가구수입

분류	무응답		10만원 미만		10-20만 원미만		20-30만 원미만		30-40만 원미만		40-50만 원미만		50-60만 원미만		60만원 이상		합
	1.5	9.1	27.3	24.2	24.2	7.6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지체장애	1.5	9.1	27.3	24.2	24.2	7.6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66(75.0)
시각장애				33.3	33.3	33.3	33.3	33.3	33.3	33.3	33.3	33.3	33.3	33.3	33.3	33.3	3(3.4)
청각. 언어장애	6.7	20.0	13.3	6.7	33.3	13.3	6.7	33.3	13.3	6.7	33.3	13.3	6.7	33.3	6.7	15(17.0)	
기타			25.0	75.0													4(4.5)
합(명)	2	9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88
%	2.3	10.2	23.9	23.9	23.9	23.9	23.9	23.9	23.9	23.9	23.9	23.9	23.9	23.9	23.9	23.9	100.0

〈부록표 8〉 일반장애인가구주의 수입소비형태

분류	빈도(명)	백분율(%)
생활비	109	71.7
치료비	6	3.9
교육비	10	6.6
용돈	2	1.3
저축	11	7.3
기타	2	1.3
미상	12	7.9
합	152	100.0

자료 : 보사연 서울

〈부록표 9〉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장애유형에 따른 빚액수

분류	30만원 미만		101-150 만원		151-200 만원		201-250 만원		251-300 만원		301-500 만원		501-700 만원		701-1000 만원		1000 만원이상		합	
	1.6	16.1	9.7	9.7	3.2	11.3	19.4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지체장애	1.6	16.1	9.7	9.7	3.2	11.3	19.4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62(74.7)	
시각장애		20.0	40.0	40.0		40.0														5(6.0)
청각. 언어장애	14.3	14.3	14.3	14.3	14.3	14.3	28.6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7(8.4)
기타		12.5	12.5	12.5		37.5														8(9.6)
무응답							100.0													1(1.2)
합(명)	2	13	10	8	5	12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83	
%	2.4	15.7	12.0	9.6	6.0	14.5	15.7	15.7	15.7	15.7	15.7	15.7	15.7	15.7	15.7	15.7	15.7	15.7	100.0	

〈부록표 10〉 전국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의 주택소유현황

분류	자가	전세	월세	기타			계
				무료임대	기타	계	
전국 계	246,523	63,596	135,114	103,789	10,482	559,504	559,504
거택	59,381	14,961	38,598	58,004	2,793	173,737	173,737
자활	187,142	48,635	96,516	45,785	7,689	385,767	385,767
서울 계	3,761	24,797	59,755	19,539	7,245	115,097	115,097
거택	819	6,280	12,780	11,060	943	31,882	31,882
자활	2,942	18,517	46,975	8,479	6,302	83,215	83,215

자료 : 보사부 '93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

<부록표 11> 서울시 생활보호대상자 중 14세이상 가구주 취업상태
단위 : 명(%)

분류	합	거택	자활
취업소계	16,629 (39.3)(100.0)	594	16,035
영세자영업	1,239 (2.9) (7.5)	50	1,189
영세농수산업	11 (0.02) (0.06)	2	9
상시고용	1,679 (4.0) (10.1)	18	1,661
임시고용	3,648 (8.6) (21.9)	102	3,546
일일고용	10,052 (23.8) (60.4)	422	9,630
미취업	2,752 (6.5)	380	2,345
비경제활동인구	22,943 (54.2)	10,696	12,247
합	42,297(100.0)	11,670	30,627

<부록표 12> 일반 장애인가구주의 현재 활동 분야

분류	빈도(명)	백분율(%)
무직.군인방위병	186	51.2
자영업주	62	17.1
전문관리직	16	4.4
단순사무직	7	1.9
서비스직	10	2.8
생산기능직	32	8.8
단순노무직	49	13.5
농어민	1	.3
합	363	100.0

자료 : 보사연 서울

<부록표 13> 전국 일반장애인의 취업구조

분류	취업자										비취업자		계
	자영업	전문관리직	단순사무직	서비스직	생산기능직	단순노무직	농어민	소계	무직	주부	학생	합	
인구수	66,513	16,190	8,370	20,442	46,969	56,476	135,323	350,283	445,941	197,316	42,659	1,036,199	
취업별 구성비(%)	18.9	4.6	2.4	5.8	13.4	16.1	38.6	100	43	19	4.1	100	
전체 구성비(%)	6.4	1.6	0.8	1.8	4.5	5.5	13.1	33.8	43	19	4.1	100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전국조사 제구성

〈부록표 14〉 나이, 장애등급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장애인 가구주의 취업시 어려움

분류	무응답		어떤직업을 기술이 직장내 고용주가 취업		적합한		보수가		기타		합
	가져야 할지물라서	이 없어서	이 없어서	편의시설	거부	알선	직종이	맞지	않아서	불편	
20-29세	16.7	3.8	13.5	5.8	16.7	50.0	16.7	5.8	3.8	23.1	6 (2.9)
30-39세	5.8	8.3	13.9	12.5	5.8	30.8	3.8	2.8	5.6	18.1	52 (25.0)
40-49세	9.7	3.7	3.7	13.0	1.9	27.8	7.4	3.7	27.8	54 (26.0)	72 (34.6)
50-59세	3.7	6.3	6.3	6.3	6.3	38.9	6.3	28.6	12.5	16 (7.7)	54 (26.0)
60-69세	18.8	28.6	14.3	100.0	10.3	20.7	10.3	6.2	4.6	18.5	65 (31.3)
70-79세	10.3	4.6	6.9	17.2	7.7	40.0	6.2	2.3	30.2	43 (20.7)	43 (20.7)
무응답	4.3	8.7	8.7	4.3	4.3	50.0	8.7	50.0	50.0	2 (1.0)	2 (1.0)
1등급	3.4	6.2	7.7	3.1	1.5	20.7	10.3	6.2	4.6	18.5	65 (31.3)
2등급	7.0	4.5	18.2	9.1	4.5	32.6	2.3	2.3	20.5	44 (21.2)	43 (20.7)
3등급	15.9	8.7	8.7	4.3	4.3	43.5	8.7	17.4	2 (1.0)	2 (1.0)	2 (1.0)
4등급	4.3	8.7	8.7	4.3	4.3	50.0	50.0	50.0	50.0	2 (1.0)	2 (1.0)
5등급	18	9	20	3	23	4	68	10	9	44	208
6등급	8.7	4.3	9.6	1.4	11.1	1.9	32.7	4.8	4.3	21.2	100.0
무응답	8.7	4.3	9.6	1.4	11.1	1.9	32.7	4.8	4.3	21.2	100.0

〈부록표 15〉 장애유형, 직업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장애인 가구주의 취업시 어려움

분류	무응답		어떤직업을 기술이 직장내 고용주가 취업일선		적합한		보수가		기타		합
	가져야 할지물라서	이 없어서	이 없어서	편의시설	거부	알선	직종이	맞지	않아서	불편	
무응답	9.9	4.6	11.8	1.3	10.5	2.0	30.3	3.9	4.6	21.1	1 (0.5)
지체장애	16.7	16.7	16.7	8.3	16.7	8.3	41.7	8.3	8.3	8.3	152 (73.1)
시각장애	9.5	4.8	4.8	4.8	4.8	38.1	14.3	9.5	14.3	21 (10.1)	12 (5.8)
청각.언어장애	4.5	4.5	4.5	18.2	18.2	36.4	36.4	36.4	36.4	22 (10.6)	21 (10.1)
기타	25.0	100.0	100.0	50.0	50.0	50.0	50.0	25.0	25.0	4 (1.9)	1 (0.5)
무응답	50.0	11.8	11.8	5.9	5.9	29.4	11.8	5.8	17.6	17 (8.2)	4 (1.9)
단순사무직	11.8	11.8	11.8	11.8	11.8	35.3	11.8	5.9	5.9	17 (8.2)	4 (1.9)
자영업	4.8	9.5	14.3	11.9	2.4	31.0	7.1	4.8	14.3	42 (20.2)	17 (8.2)
영세자영업	10.1	2.2	7.9	1.1	11.2	31.5	1.1	4.5	29.2	89 (42.8)	42 (20.2)
판매.서비스업	7.4	3.7	7.4	3.7	11.1	40.7	3.7	22.2	27 (13.0)	27 (13.0)	27 (13.0)
단순서비스업	18	9	20	3	23	4	68	10	9	44	208
생산.기능직	8.7	4.3	9.6	1.4	11.1	1.9	32.7	4.8	4.3	21.2	100.0
비숙련 단순노동	8.7	4.3	9.6	1.4	11.1	1.9	32.7	4.8	4.3	21.2	100.0
무직	8.7	4.3	9.6	1.4	11.1	1.9	32.7	4.8	4.3	21.2	100.0
기타	18	9	20	3	23	4	68	10	9	44	208
무응답	8.7	4.3	9.6	1.4	11.1	1.9	32.7	4.8	4.3	21.2	100.0
합(명)	18	9	20	3	23	4	68	10	9	44	208
%	8.7	4.3	9.6	1.4	11.1	1.9	32.7	4.8	4.3	21.2	100.0

<부록표 16> 서울시 일반가구주의 직업훈련수혜여부

분류	빈도(명) 백분율(%)	
예	11	2.8
아니오	79	19.8
비해당	297	74.7
미상	11	2.8
합	398	100.0

자료 : 보사연 서울.

<부록표 17>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나이, 장애유형에 따른 직업훈련여부의 관계

분류	모른다	알고 있다	이용한 적 있다	합
20-29세	33.3	50.0	16.7	6(2.9)
30-39세	42.3	38.5	19.2	52(25.0)
40-49세	47.2	43.1	9.7	72(34.6)
50-59세	59.3	37.0	3.7	54(26.0)
60-69세	68.8	31.3		16(7.7)
70-79세	100.0			7(3.4)
무응답			100.0	1(.5)
지체장애	50.0	40.8	9.2	152(73.1)
시각장애	33.3	58.3	8.3	12(5.8)
청각.언어장애	71.4	14.3	14.3	21(10.1)
기타	54.5	31.8	13.6	22(10.6)
무응답	100.0			1(.5)
단순 사무직		100.0		1(.5)
자영업	75.0	25.0		4(1.9)
영세자영업	35.3	29.4	35.3	17(8.2)
판매.서비스	33.3	66.7		3(1.4)
단순 서비스	25.0	50.0	25.0	4(1.9)
생산.기능직	41.2	29.4	29.4	17(8.2)
비숙련 단순	64.3	33.3	2.4	42(20.2)
무직	51.7	41.6	6.7	89(42.8)
기타	51.9	40.7	7.4	27(13.0)
무응답	75.0	25.0		4(1.9)
합(명)	108	79	21	208
(%)	51.9	38.0	10.1	100.0

<부록표 18> 서울 생활보호대상장애인 가구주의 직업훈련과 직업과의 관계

분류	무응답	단순 사무직	단순 자영업	영세 자영업	판매 서비스	단순 서비스	단순 서비스	생산 기능직	비숙련 단순노동	무직	기타	합
모른다	3.3		1.7	9.2	3.7	1.7	1.7	9.2	23.3	37.5	14.2	120(57.5)
알고있다		1.2	2.5	7.4	3.7	2.5	2.5	4.9	16.0	49.4	12.3	81(38.9)
이용한 적있다								28.6	14.3	57.1		7(3.4)
합(명)	4	1	4	17	3	4	4	17	42	89	27	208
(%)	1.9	.5	1.9	8.2	1.4	1.9	1.9	8.2	20.2	42.8	13.0	100.0

<부록표 19> 서울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고용의무제 이용에 따른 직업유형

분류	무응답	단순 사무직	단순 자영업	영세 자영업	판매 서비스	단순 서비스	단순 서비스	생산 기능직	비숙련 단순노동	무직	기타	합
모른다	3.3		1.7	9.2	3.7	1.7	1.7	9.2	23.3	37.5	14.2	120(57.2)
알고있다		1.2	2.5	7.4	3.7	2.5	2.5	4.9	16.0	49.4	12.3	81(38.9)
이용한 적있다								28.6	14.3	57.1		7(3.4)
합(명)	4	1	4	17	3	4	4	17	42	89	27	208
(%)	1.9	.5	1.9	8.2	1.4	1.9	1.9	8.2	20.2	42.8	13.0	100.0

<부록표 20>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나이, 장애유형에 따른 고용의무제의 이용

분류	모른다 알고있다			이용한 적 있다	합
	모른다	알고있다			
무응답	100.0				1(.5)
20-29세	33.3	16.7	50.0		6(2.9)
30-39세	55.8	42.3	1.9		52(25.0)
40-49세	58.3	38.9	2.8		72(34.6)
50-59세	55.6	44.4			54(26.0)
60-69세	62.5	31.3	6.3		16(7.7)
70-79세	85.7	14.3			7(3.4)
무응답	100.0				19.5)
지체장애	54.6	42.1	3.3		152(73.1)
시각장애	41.7	58.3			12(5.8)
청각.언어장애	76.2	19.0	4.8		21(10.1)
기타	68.2	27.3	4.5		22(10.6)
합(명)	120	81	7		208
%	57.7	38.9	3.4		100.0

<부록표 21>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장애발생시의 치료정도와 치료만족도의 관계

분류	무응답 매우 만족한다 그저 불만족 매우불만 합						
	매우 만족한다	그렇다	스럽다	족스럽다			
전혀 받지 못했다	94.1					32(15.4)	
거의 받지 못했다			5.0	22.4	29.2	23(11.1)	
약간 받았다		26.9	53.3	48.3	33.3	75(36.1)	
그런대로 잘 받았다	16.7	50.0	30.0	20.7	29.2	51(24.5)	
매우 충분히 받았다	83.3	23.1	8.3	8.6	8.3	23(11.1)	
기타			1.7			1(.5)	
무응답	5.9		1.7			3(1.4)	
합(명)	34	6	26	60	58	24	208
%	16.3	2.9	12.5	28.8	27.9	11.5	100.0

<부록표 22> 서울시 일반 장애인 가구주의 장애발생시의 의사치료시기

분류	빈도(명)	백분율(%)
치료받지않았다	51	12.8
병이생긴직후(1개월이내)	241	60.6
1-3개월이내	14	3.5
4-6개월이내	11	2.8
7-12개월이내	11	2.8
1-3년이내	20	5.0
4-6년이내	19	4.8
미상	31	7.8
합	398	100.0

자료 : 보사연 서울.

<부록표 23> 서울시 일반장애인 가구주의 지금치료시 회복여부

분류	빈도(명)	백분율(%)
예	100	41.8
아니오	126	52.7
미상	13	5.4
합	239	100.0

자료 : 보사연 서울.

<부록표 24> 생활보호대상장애인 가구주의 장애유형과 치료정도의 관계

분류	무 전혀받지 거의받지 약간 그런대로 충분히 기타 합							
	응답	못했다	못했다	받았다	잘 받았다	받았다		
지체장애	1.3	9.9	13.2	34.9	26.3	13.8	.7	152 (73.1)
시각장애				41.7	41.7	16.7		12 (5.8)
청각.언어장애	4.8	57.1	9.5	14.3	14.3			21 (10.1)
기타		22.7	4.5	59.1	13.6			22 (10.6)
무응답				100.0				1 (.5%)
합(명)	3	32	23	75	51	23	1	208
%	1.4	15.4	11.1	36.1	24.5	11.1	.5	100.0

<부록표 25> 장애발생시 치료가 충분했는지의 여부
(치료를 받은 경우만 해당)

분류	빈도(명)	백분율(%)
예	156	45.5
아니오	169	49.3
미상	18	5.2
합	343	100.0

자료 : 보사연 서울

<부록표 26> 장애발생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
(치료 받지 않은 이는 제외됨)

분류	빈도(명)	백분율(%)
경제적어려움	86	46.0
치료시기를 놓쳐서	17	9.1
나올 것같지않아서	30	16.0
부모의 무지 또는 무관심	5	2.7
잘몰라서	8	4.3
기타	28	15.0
미상	13	7.0
합	187	100.0

자료 : 보사연 서울

<부록표 27> 일반장애인 가구주의 보장구 현재 사용 여부

분류	빈도(명)	백분율(%)
예	179	84.8
아니오	21	10.0
미상	11	5.2
합	211	100.0

자료 : 보사연 서울

<부록표 28>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나이, 장애등급에 따른 보장구 무료교부 인지도부

분류	모른다	알고있다	이용한 적 있다	합
20-29세	33.3	33.3	33.3	6(2.9)
30-39세	38.5	32.7	28.8	52(25.0)
40-49세	40.3	36.1	23.6	72(34.6)
50-59세	63.0	18.5	18.5	54(26.0)
60-69세	31.3	56.3	12.5	16(7.7)
70-79세	71.4		28.6	7(3.4)
무응답		100.0		1(.5)
1등급	37.9	20.7	41.4	29(13.9)
2등급	52.3	24.6	23.1	65(31.3)
3등급	32.6	41.9	25.6	43(20.7)
4등급	45.5	36.4	18.2	44(21.2)
5등급	60.9	34.8	4.3	23(11.1)
6등급	100.0			2(1.0)
무응답	100.0			2(1.0)
합(명)	95	65	48	208
%	45.7	31.3	23.1	100.0

<부록표 29>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나이, 본인소득과 병원이용정도의 관계

분류	무응답	자주 한다	가끔 한다	대체로 하는편	거의 못한다	전혀 못한다	합
20-29세		16.7	50.0	16.7	16.7		6(2.9)
30-39세	1.9	13.5	28.8	19.2	34.6	1.9	52(25.0)
40-49세		31.9	16.7	9.7	22.2	19.4	72(34.6)
50-59세		33.3	31.5	9.3	16.7	9.3	54(26.0)
60-69세		68.8	18.8	12.5			16(7.7)
70-79세	14.3	28.6	28.6			28.6	7(3.4)
무응답				100.0			1(.5)
없다		18.8	50.0	6.3	25.0		16(7.7)
10만원 미만		40.9	10.6	6.1	27.3	15.2	66(31.7)
10-20만원	2.7	35.1	24.3	24.3	8.1	5.4	37(17.8)
21-30만원		26.9	42.3	3.8	19.2	7.7	26(12.5)
31-40만원		15.4	38.5	19.2	15.4	11.5	26(12.5)
41-50만원		11.1		33.3	44.4	11.1	9(4.3)
51-60만원		25.0		25.0	25.0	25.0	4(1.9)
61만원 이상			33.3		33.3	33.3	3(1.4)
무응답	4.8	28.6	28.6	9.5	19.0	9.5	21(10.1)
합(명)	2	62	52	26	44	22	208
%	1.0	29.8	25.0	12.5	21.2	10.6	100.0

<부록표 30> 전국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현황

분류		빈도(명)	백분율(%)
수용인원	30명 미만	4	
	30 - 50명	11	10.9
	50 - 70명	16	15.8
	70 - 100명	19	15.8
	100 - 120명	21	20.8
	120 - 150명	14	13.9
	150 - 200명	9	8.9
200명 미만	7	6.9	
합(개소)		101	100.0
수용기간	1년 미만	841	8.1
	1 - 2년	894	8.7
	2 - 3년	829	8.0
	3 - 4년	790	7.7
	4 - 5년	890	8.6
	5년 이상	5,965	57.8
나이	0 - 9세	987	9.6
	10 - 19세	4,330	41.9
	20 - 29세	3,238	31.4
	30 - 39세	1,035	10.9
	40 - 49세	361	3.5
	50 - 59세	200	1.9
	60세 이상	65	0.6
장애유형	지체장애	2,332	22.6
	시각장애	704	6.8
	청각장애	252	2.4
	언어장애	330	3.2
	정신지체	5,799	56.2
	청각.언어	851	8.2
	기타	31	0.4
장애등급	1급	4,427	42.9
	2급	3,352	32.5
	3급	1,591	15.4
	4급	269	2.6
	5급	83	0.8
	6급	83	0.8
	미상	521	5.0
합		10,362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3:)

<부록표 31> 생활보호대상중 시설보호의 현황

분류	아동시설			결핵	노인시설	장애인	정신질환	부랑아	부녀직업보도기타	나불구	부랑인	합계
	소계	영아	육아									
시설수	278	29	219	2	104	146	74	9	25	3	9	709
수용자수	21,216	1,879	18,259	56	7,067	13,471	18,084	2,353	1,042	902	10,601	77,843

자료: 보사부(1993:)

단위: 명(%)

<부록표 32> 일반장애인거주지의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

분류	빈도수	백분율
장애인복지관	3	10.3
재활원	2	6.9
병원재활시설	5	17.2
기타	8	27.6
미상	11	37.9
합	29	100.0

자료: 보사연 서울

<부록표 33> 일반장애인거주지의 이용하는 서비스 내용

분류	빈도수	백분율
상담	1	3.4
치료	10	34.5
검사	2	6.9
직업훈련	1	3.4
기타	4	13.8
미상	11	37.9
합	29	100.0

자료: 보사연 서울

<부록표 34> 생활보호대상장애인 가구의 주거형태, 직업, 가구 월평균수입에 따른 생활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분류	무응답	직장마련	임금인상	내집마련	장예의 자녀양육	가정문제	직업훈련	기타	합
자기집		100.0							1(.5)
전세	30.6	10.2	24.5	10.2	12.2			12.2	49(23.6)
월세	15.2	2.2	56.5	6.5	2.2		4.3	13.0	46(22.1)
친척집			33.3					66.7	3(1.4)
친구집	20.0		20.0	60.0				5(2.4)	5(2.4)
영구임대	27.8	7.2	13.4	21.6	16.5	1.0		5.2	97(46.6)
무로임대			60.0	40.0				5(2.4)	5(2.4)
기타			100.0						2(1.0)
단순 사무직	100.0								1(.5)
자영업			50.0	25.0				25.0	4(1.9)
영세자영업	35.3	11.8	23.5	17.6	5.9			5.9	17(8.2)
판매, 서비스업			33.3	33.3	33.3				3(1.4)
단순, 서비스업			25.0						4(1.9)
생산, 기능직	11.8	75.0	23.5	11.8	17.6			11.8	17(8.2)
비숙련, 단순노동	2.4	19.0	42.9	7.1	4.8			11.9	42(20.2)
무직	3.4	11.9	24.7	22.5	14.6		2.2	10.1	89(42.8)
기타(학생, 주부)	7.4	44.4	25.9	11.1	7.4			3.7	27(13.0)
무응답	25.0	25.0		25.0					4(1.9)
10만원 미만	3.4	24.1	27.6	24.1	6.9		3.4	10.3	29(13.9)
10-20만원	22.0	4.9	31.7	19.5	7.3			14.6	41(19.7)
21-30만원	2.7	8.1	27.0	10.8	16.2		2.7	5.4	37(17.8)
31-40만원	6.1	8.2	24.5	18.4	6.1			8.2	49(23.6)
41-50만원	3.6	17.9	42.9	14.3	7.1			10.7	28(13.5)
51-60만원	14.3	28.6	14.3	28.6				7(3.4)	7(3.4)
61만원 이상	15.4	7.7	7.7	38.5	7.7			13(6.3)	13(6.3)
없다	50.0						50.0		2(1.0)
무응답	50.0								2(1.0)
합(명)	7	50	14	58	34	23	1	2	19
%	3.4	24.0	6.7	27.9	16.3	11.1	.5	1.0	9.1

<부록표 35> 생활대상장애인 가구주의 단체나 정당가입 의사에 따른 장애인복지에 대한 견해

분류	무응답	과거에 비해매우 안정	과거에 과거와 비슷	비해다소 나빠짐	과거에 과거에 비해매우 나빠짐	기타	합
무응답	100.0						1(.5)
가임, 적극활동	12.3	24.6	43.9	3.5	7.0	8.8	57(27.4)
가임, 활동불가능	6.6	44.3	29.5	6.6	1.6	9.8	61(29.3)
가임, 무활동	7.4	59.3	22.2	3.7	3.7	3.7	27(13.0)
가임, 필요없음	6.3	37.5	37.5	6.3	12.5	16(7.7)	16(7.7)
활동을 보고결정	10.0	30.0	50.0	3.7	10.0	10(4.8)	10(4.8)
잘 모르겠다	3.7	29.6	33.3	3.7	22.2	27(13.0)	27(13.0)
기타	11.1	44.4	22.2	11.1	11.1	9(4.3)	9(4.3)
합(명)	2	18	78	9	6	22	208
%	1.0	8.7	37.5	4.3	2.9	10.6	100.0

<부록표 36> 생활보호대상장애인 가구주의 단체나 정당가입의사에 따른 정치적 안정에 대한 견해

분류	무응답	과거에 비해매우 안정	과거에 과거와 비슷	비해다소 나빠짐	과거에 과거에 비해매우 나빠짐	기타	합
무응답	100.0						1(.5)
가임, 적극활동	19.3	31.6	28.1	7.0	3.5	10.5	57(27.4)
가임, 활동불가능	1.6	57.4	18.0	6.6	4.9	4.9	61(29.3)
가임, 무활동	3.7	40.7	22.2	3.7	14.8	6.3	27(13.0)
가임, 필요없음	6.3	31.3	25.0	6.3	6.3	16(7.7)	16(7.7)
활동을 보고결정	20.0	30.0	30.0	20.0	3.7	29.6	10(4.8)
잘 모르겠다	7.4	33.3	22.2	11.1	22.2	27(13.0)	27(13.0)
기타	22.2	33.3	11.1	11.1	11.1	9(4.3)	9(4.3)
합(명)	5	31	84	12	3	24	208
%	2.4	14.9	40.4	5.8	1.4	11.5	100.0

<부록표 37>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단체나 정당가입의사에 따른 빈부격차에 대한 견해

분류	무응답	과거에 과거에 과거와 과거에 과거에 모르겠다 기타 합		합				
		비해매우 안전	비해다소비해매우 나빠짐					
무응답		100.0		1(0.5)				
가입, 적극활동	7.0	14.0	28.1	17.5	22.8	10.5		57(27.4)
가입함, 활동불가능	1.6	29.5	36.1	13.1	9.8	8.2	1.6	61(29.3)
가입못함, 지지	3.7	11.1	29.6	22.2	25.9	7.4		27(13.0)
가입, 활동필요못느낌		12.5	37.5	18.8	31.3			16(7.7)
활동을 보고결정		20.0	30.0	40.0		10.0		10(4.8)
잘모르겠다	3.7	22.2	29.6	11.1	3.7	29.6		27(13.0)
기타	11.1	33.3	22.2	11.1	11.1	11.1	11.1	9(4.3)
합(명)	2	9	48	63	36	27	21	2
%	1.0	4.3	23.1	30.3	17.3	13.0	10.1	1.0
								100.0

<부록표 38>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빈곤극복,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망과 빈부격차에 대한 전망의 관계

분류	매우 줄어들 것이다		다소 비슷할 것이다		다소 심해짐 심해짐		매우 모르겠다 기타 무응답 합	
	줄어들	증가	것이다	심해짐	심해짐	심해짐	모르겠다	기타
자신의 힘으로	8.7	23.2	29.0	14.5	15.9	7.2	1.4	69(33.2)
정부의 혜택	3.2	19.0	33.3	19.0	12.7	12.7		63(30.3)
단체를만들어권리		50.0	25.0	25.0				4(1.9)
사회가더많은 관심		35.5	32.3	16.1	6.5	9.7		31(14.9)
노력해도 불가능	5.0	10.0	20.0	25.0	30.0	10.0		20(9.6)
잘모르겠다		12.5	37.5	18.8		18.8	6.3	16(7.7)
기타		75.0	25.0					4(1.9)
무응답							100.0	1(0.5)
매우잘이루어 질 것임	33.3	11.1	22.2	11.1	5.6	16.7		18(8.7)
다소잘 이루어질 것임	1.3	44.9	26.9	17.9	7.7	1.3		78(37.5)
비슷할 것이다	1.4	9.9	49.3	22.5	11.3	5.6		71(34.1)
다소나빠질 것이다		11.1		44.4	44.4			9(4.3)
매우나빠질 것이다	16.7	16.7			66.7			6(2.9)
모르겠다		9.1	13.6		18.2	59.1		22(10.6)
기타							100.0	2(1.0)
무응답							100.0	2(1.0)
합(명)	9	48	63	36	27	21	2	208
%	4.3	23.1	30.3	17.3	13.0	10.1	1.0	100.0

II. 설문지

서울시 생활보호대상장애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

일련번호

--	--	--

안녕하십니까?

지난 십여년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은 '장애와 빈곤'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에서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생활개선을 위한 대안을 세우기 위하여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 및 결과는 빈곤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자료로만 이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오니 본 설문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연락처: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102-6. 216-0683)

조사원 성명 :

조사원 연락처 :

면접 일시 :

1. 귀하의 연령은 현재 몇 세입니까?
만()세

2.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 1)미혼 2)기혼
3)동거 4)이혼
5)별거·사별 6)기타

3. 귀하 배우자의 연령은 현재 몇세입니까?
만()세

4. 귀하와 현재 같이 살고있는 가족은 몇명입니까?

남 ()명
여 ()명

5. 현재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구 ()동

6. 귀하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

7. 귀하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 1)지체장애 2)정신지체
3)시각장애 4)청각·언어장애
5)중복장애(장애의 유형:)
6)기타()

8. 귀하의 장애는 몇 등급입니까?
()급 ()호

9. 귀하가 장애인이 된 것은 언제입니까?

- 1)선천성(태아) 2)출생 - 만 1세
3)만 2 - 만 6세 4)만 7 - 만 12세
5)만 13 - 만 18세 6)만 19 - 만 30세
7)만 31 - 만 40세 8)만 41 - 만 50세
9)만 51세 이상 10)모르겠다

10. 귀하는 어떤 원인으로 장애인이 되셨습니까?

- 1)선천성 2)출산시 이상
3)교통사고 4)산업재해(직업병)
5)군복무중 안전사고 또는 전시부상 6)약물중독 및 오·남용
7)일반외상 8)노인성질환
9)감염 및 유행성질환(소아마비, 장티프스 등) 10)퇴행성질환()
11)의료사고 12)유전(대두증, 안짱다리등)
13)기타 () 14)모르겠다

11. 귀하의 가족 중에 귀하를 제외한 장애인이 있습니까?

- 1)없다
2)있다()명

12. 귀하의 직업은 다음중 무엇입니까?

- 1) 전문·관리·사무
- 2) 단순 사무직
- 3) 자영업
- 4) 영세자영업
- 5) 판매·서비스업
- 6) 단순 서비스업
- 7) 생산 기능직
- 8) 비숙련 단순 노동
- 9) 농어업
- 10) 무직(→ 14번으로)
- 11) 기타(학생, 주부)

13. 귀하는 현재의 직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 2) 만족한다
- 3) 그저 그렇다
- 4) 불만이다
- 5) 매우 불만이다

14. 귀하가 앞으로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면 어떤 직업을 원하십니까?

- 1) 전문·관리·사무직
- 2) 단순 사무직
- 3) 자영업
- 4) 영세자영업
- 5) 판매·서비스업
- 6) 단순 서비스업
- 7) 생산 기능직
- 8) 비숙련 단순 노동
- 9) 농어업
- 10) 기타

15. 귀하는 한달 평균 며칠 일하십니까?

- 1) 5일미만
- 2) 5-10일
- 3) 11-15일
- 4) 16-20일
- 5) 21-25일
- 6) 26-30일
- 7) 전혀 일하지 않는다

16.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1) 무학
- 2) 국교 중퇴
- 3) 국 졸
- 4) 중학교 중퇴
- 5) 중학교 졸
- 6) 고등학교 중퇴
- 7) 고등학교 졸
- 8) 대학(전문대) 중퇴
- 9) 대졸(전문대) 이상

17. 귀하의 배우자는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습니까?

- 1) 무학
- 2) 국교 중퇴
- 3) 국 졸
- 4) 중학교 중퇴
- 5) 중학교 졸
- 6) 고등학교 중퇴
- 7) 고등학교 졸
- 8) 대학(전문대) 중퇴
- 9) 대졸(전문대) 이상

18. 귀하의 생활보호 형태는 무엇입니까?

- 1) 거택보호(1종)
- 2) 자활보호(2종)

19. 귀하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19()년 부터 ()년간

20. 귀하의 재산중 동산은 총 얼마입니까?

- 1) 100만원 미만
- 2) 100만원 이상
- 3) 200만원 이상
- 4) 300만원 이상
- 5) 500만원 이상
- 6) 700만원 이상
- 7) 1,000만원 이상
- 8) 없다

21. 귀하의 재산중 부동산은 총 얼마입니까?

- 1) 100만원 미만
- 2) 100만원 이상
- 3) 200만원 이상
- 4) 300만원 이상
- 5) 500만원 이상
- 6) 700만원 이상
- 7) 1,000만원 이상
- 8) 없다

22. 귀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1) 10만원 미만
- 2) 10-20만원
- 3) 21-30만원
- 4) 31-40만원
- 5) 41-50만원
- 6) 51-60만원
- 7) 61만원 이상

23. 귀하의(가구주 본인)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1) 10만원 미만
- 2) 10-20만원
- 3) 21-30만원
- 4) 31-40만원
- 5) 41-50만원
- 6) 51-60만원
- 7) 61만원 이상
- 8) 없다

24. 귀하 가구의 주소소득원은 무엇입니까?

- 1) 세대주의 정기소득(임금)
- 2) 배우자의 정기소득
- 3) 자녀의 정기소득
- 4) 생계보조 수당
- 5) 이웃, 친구의 도움
- 6) 형제, 친척의 도움
- 7) 부모유산
- 8) 연금
- 9) 종교단체 등의 각종단체 후원금
- 10) 기타 ()

25. 귀하 가구는 현재보다 매월 어느정도의 수입을 더 원하십니까?

- 1) 10-20만원
- 2) 21-30만원
- 3) 31-40만원
- 4) 41-50만원
- 5) 51-60만원
- 6) 61만원 이상
- 7) 현재로 만족한다

26. 귀하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어느정도입니까?

- 1) 10만원 미만
- 2) 10-20만원
- 3) 21-30만원
- 4) 31-40만원
- 5) 41-50만원
- 6) 51-60만원
- 7) 61만원 이상

27. 지출 내역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고르시오)

- 1) 의·식생활비
- 2) 자녀 교육비(등록금, 학습자료비등 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
- 3) 의료비
- 4) 보장구 구입비
- 5) 교통비
- 6) 공공요금비
- 7) 주거비(임대료)
- 8) 문화생활비
- 9) 생활용품(가전제품, 가구구입등의 생필품) 구입비
- 10) 저축
- 11) 기타 ()

28. 귀하는 현재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 1) 한다
- 2) 안한다(→ 31번으로)

29. 귀하의 한달 저축액은 얼마입니까?

- 1) 1 - 2만원
- 2) 3 - 4만원
- 3) 5 - 9만원
- 4) 10 - 14만원
- 5) 15 - 19만원
- 6) 20 - 29만원
- 7) 30만원 이상

30. 귀하는 무엇을 위하여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 1) 내집 마련
- 2) 자녀 교육비 마련
- 3) 노후 대비
- 4) 결혼비용 마련
- 5) 사업자금 마련
- 6) 의료재활
- 7) 직업재활
- 8) 기타()

31. 귀하는 현재 빚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35번으로)

32. 귀하는 현재 빚을 얼마나 지고 있습니까?

- 1) 30만원 미만
- 2) 31 - 100만원
- 3) 101 - 150만원
- 4) 151 - 200만원
- 5) 201 - 250만원
- 6) 251 - 300만원
- 7) 301 - 500만원
- 8) 501 - 700만원
- 9) 701 - 1,000만원
- 10) 1001만원 이상

33. 귀하는 어디에 빚을 지셨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이자	무이자
1) 부모		
2) 형제		
3) 친구		
4) 친척		
5) 이웃		
6) 은행		
7) 사채		
8) 정부 용자		
9) 기타		

34. 귀하가 빚을 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생활비 마련
- 2) 의료비용 마련
- 3) 보장구 구입
- 4) 자녀교육비
- 5) 주택 마련
- 6) 사업
- 7) 관혼상제
- 8) 기타 ()

35. 귀하가 거주하는 주거는 어떤 것입니까?

- 1) 자기집
- 2) 전세
- 3) 월세
- 4) 친척집
- 5) 친구집
- 6) 영구임대아파트
- 7) 무료임대
- 8) 기타

36. 귀하 가구가 사용하는 방 수는 몇개입니까?

- 1) 1개
- 2) 2개
- 3) 3개
- 4) 4개 이상

37. 귀하는 장애발생후 어느정도의 치료를 받았습니까?

- 1) 전혀 받지 못했다(→ 39번으로)
- 2) 거의 받지 못했다
- 3) 약간 받았다
- 4) 그런대로 잘 받았다
- 5) 매우 충분히 받았다

38. 귀하가 받은 치료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 2) 만족한다
- 3) 그저 그렇다
- 4) 불만족스럽다
- 5) 매우 불만족스럽다

39. 치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돈이 없어서
- 2) 치료시설이 없어서
- 3) 치료에 대해 잘 몰라서
- 4)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 5) 치료시설이 너무 멀어서
- 6) 가족의 무관심 때문에
- 7) 장애를 알리기 싫어서
- 8) 기타 ()

40. 정부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료로 보장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정부로부터 무료로 보장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42번으로)

41. 귀하가 정부로부터 무료로 보장구를 받았을 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다?

- 1) 불편한 점 없다
- 2) 보장구가 한정되어 있다(액수가 너무 적다)
- 3) 보장구를 받기까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검진기관이 멀다.
- 4) 보장구 지급시기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
- 5) 한번 보장구를 받은 후 다시 받을 때까지 기간이 너무 길다

42. 귀하는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43. 귀하가 직업훈련을 받았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 1) 받지 않았다
- 2) 시계조립/수리
- 3) 도장
- 4) 컴퓨터(정보처리)
- 5) 인쇄
- 6) 양재.편물
- 7) 목공예
- 8) 기계
- 9) 전자
- 10) 안마
- 11) 침술
- 12) 기타 ()

44. 직업을 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습니다?

- 1)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 지 몰라서
- 2) 기술이 없어서
- 3) 직장내 편의시설이 없어서
- 4) 고용주가 거부해서
- 5) 취업알선 기관의 부족
- 6)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이 부족해서
- 7) 보수가 맞지 않아서
- 8) 출.퇴근(교통)이 불편해서
- 9) 기타 ()

45. 귀하는 9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1) 알고 있다
- 2) 모르고 있다.

46.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장애인의 취업이 어느정도 쉬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상당히 쉬워졌다
- 2) 약간 쉬워졌다
- 3) 그저 그렇다
- 4) 쉬워지지 않았다
- 5) 오히려 어려워졌다

47. 다음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복지 서비스	알고 있다	이용 한적 있다
1) 수용시설		
2) 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치료, 상담, 심리평가 등)		
3) 특수교육제도		
4) 장애인 등록제		
5) 장애인 고용 의무제		
6) 세금 및 공공 요금 할인제 (전화세, 자동차세, 지하철 요금)		
7) 자립자금 융자		
8) 자동차 구입비 융자		
9) 재활 치료		
10) 직업 훈련		
11) 그룹홈		
12) 보장구 지급		

48. 귀하는 외출시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십니까?

- 1) 버스
- 2) 전철, 지하철, 기차
- 3) 택시
- 4) 승용차
- 5) 오토바이
- 6) 도보
- 7) 기타 ()

49. 귀하는 다음의 일상활동을 얼마나 하십니까?

	자주한다	가끔한다	대체로 하 는 편이다	거의 못한다	전혀 못한다
1) 공중 목욕탕 이용					
2) 이 미용실 이용					
3) 병원					
4) 외식					
5) 연극 영화 전시장 음악회등					
6) 운동경기관람					
7) 쇼핑					
8) 종교활동					
9) 친구친척 방문					
10) 공공장소 방문					
11) 단체활동					

50. 귀하는 자녀양육(0-3세까지)을 위하여 다음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불필요하다
아이를 돌봐줄 가정봉사원				
무료타아소 설치 및 확대				

51. 귀하는 빈곤의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1) 장애때문에
- 2) 배운게 없어서
- 3) 직장이 없어서
- 4) 사업실패때문에
- 5) 자녀교육때문에
- 6) 물려받은 유산이 없어서
- 7) 갑자기 병이 나거나 사고를 당해서
- 8) 열심히 일해도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기때문에
- 9)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서
- 10) 기타 ()

52. 귀하는 현재 생활수준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상층<----- 중간층 ----->최하층

1	2	3	4	5
---	---	---	---	---

53. 귀하가 생활을 개선하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1) 직장마련 | 2) 임금인상 |
| 3) 내집마련 | 4) 장애의 치료와 재활 |
| 5) 자녀양육 및 교육 | 6) 가정문제 상담 및 상의 |
| 7) 직업훈련 | 8) 기타 () |

54. 귀하는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1) 자신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정부가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 3) 단체를 만들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 4)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5)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다
- 6) 잘 모르겠다

55. 앞으로 귀하의 생활수준은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 1) 많이 나아질 것이다
- 2) 조금 나아질 것이다
- 3) 변함없을 것이다
- 4) 조금 나빠질 것이다

5) 많이 나빠질 것이다

6) 잘 모르겠다

56. 귀하는 노후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1) 노후 보장보험을 들고 있다
- 2) 자녀나 친지들에게 기댈 것이다
- 3) 정부나 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시설에 들어갈 것이다
- 4) 기도원이나 절에 들어가겠다
- 5) 노후대책을 세울 여유가 없다
- 6) 생각해본 적 없다

57. 귀하는 빈곤한 가족 및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나 정당이 있다면 가입하거나 활동할 의사가 있습니까?

- 1)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
- 2) 가입은 하겠으나 적극적인 활동은 어려울 것 같다
- 3) 가입은 못하더라도 뒤에서 적극 지지하겠다
- 4) 가입하거나 활동할 필요를 못 느낀다
- 5) 단체나 정당의 활동 경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 6) 기타 ()
- 7) 잘 모르겠다

58. 다음 질문중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0쪽으로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4쪽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렇다면 중간)

	0	1	2	3	4
1) 살아가는데는 명백한 법칙이 있다					
2) 이 세상에는 진실로 믿음만한 사람이 있다					
3)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4)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자식까지 가난하라는 법은 없다					
5)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다					
6) 삶의 목표는 분명히 세워야 한다					

59.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안정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과거에 비해 매우 안정될 것이다
- 2) 과거에 비해 다소 안정될 것이다
- 3) 과거와 비슷할 것이다
- 4) 과거에 비해 다소 나빠질 것이다

5)과거에 비해 매우 나빠질 것이다
 60.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앞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과거에 비해 매우 잘 이루어 질 것이다
- 2)과거에 비해 다소 이루어 질 것이다
- 3)과거와 비슷할 것이다
- 4)과거에 비해 다소 나빠질 것이다
- 5)과거에 비해 매우 나빠질 것이다

61.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앞으로 빈부격차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과거에 비해 매우 줄어들 것이다
- 2)과거에 비해 다소 줄어들 것이다
- 3)과거와 비슷할 것이다
- 4)과거 보다 다소 심해질 것이다
- 5)과거에 비해 매우 심해질 것이다

* 수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III. 직업분류표

직업	직종
1. 전문직 · 관리직 · 사무직	1)의사. 판사 2)약사. 간호사 3)교사 4)엔지니어. 건축기사 5)언론인 6)목사. 스님 7)침술사 8)학원경영 9)기타 전문직 종사자(그룹과의, 전도사, 속기사, 스탠드바이 기타 주자, 무용수) 10)태권도 사범. 조각가. 만화가. 화가 11)고급공무원(4급공무원, 총경이상) 12)일반공무원(5급사무관, 경정이하, 체신공무원, 면장). 민의원 13)군장교 14)회사중역(이사급 이상). 중소기업경영주 15)회사중간 관리직(부장, 차장, 과장급). 농협조합장 16)사무직. 은행원(대리, 계장, 주임, 평사원) 행정서사
2. 단순사무직 종사자	17)군 하사관 18)하위 사무직(경리사원, 영업사원, 서무실 직원) 19)역무원. 전화교환원 20)기타 사무직(군무원, 행정보조원)
3. 자영업자	21)상점주인(도소매, 전자제품대리점, 철물점) 22)서비스 업주(음식점, 여관, 당구장, 치킨센터, 전당포, 신문보급소) 23)복덕방 주인(동업포함). 부동산중개인. 땅장사 24)집장사. 무기중간상 25)인쇄소 주인. 양조장 주인. 염전경영 26)봉제공장 경영 27)기타 소규모 제조업자 28)자전거 수리. 세탁소. 의상실. 구두가게. 사진관 전파사 29)보일러 설비. 건축샤시. 정화조 수리 30)화물선 소유 · 운전. 선주 31)지주 32)집세 · 방세 · 수입자. 증권투자 수입자
4. 영세상인 · 영세기능인	33)기타 자영 기능인(열쇠, 구두수리, 용기그릇굽기 가내 스웨터 짜기)

직업	직종
	34)구멍가게. 만화가게 운영 35)잡화행상. 보따리 장사. 리어카 행상. 자전거행상 36)노점상(의류, 일용품, 채소) 37)트럭 야채장수·옷장수 38)월부 장사(책, 전기제품) 39)고물(수집)상 40)중간상. 중개상. 두부·콩나물 중간 매매. 대리석 수집상 41)수도수리. 구들장 놓기 42)포장마차 43)간이주점
5. 판매·서비스 노동자	44)점원. 판매원 45)배달원 46)보험 외판원. 양복 세일즈맨. 월부 확인자 47)극장 광고인 48)주방장. 주방일. 요리사 49)이발사. 미용사 50)빌딩 관리인. 청소감독 51)식당·다방·여관·호텔 종업원 52)건설 미용사. 간호보조원. 정원사. 탁아모. 유치원 보조 53)철학관 54)외항선원. 어부
6. 단순 서비스 노동자	55)수위. 경비원 56)청소원 57)파출부 58)기타 서비스 종사자(보건소 방역, 세차장 종업원, 옷수선, 골프장 캐디)
7. 생산·기능직 노동자	59)생산 감독. 광산 근로감독 60)건축 기능공 61)선반공. 용접공. 금형공. 금은세공공 62)전기공. 배선공. 배관공 63)인쇄공. 간판공. 칠기기능공 64)보일러공 65)방직공. 재단공. 봉제공. 미싱공. 편직공. 제화공) 66)공장근로자. 공원. 직공 67)광부 68)택시·승용차 운전사 69)버스·트럭 운전사 70)정비공
8. 비숙련 단순노동	71)건설공. 건설목수

직업	직종
	72)공장 시다. 공사장 시다 73)가내단순노동(단추달기, 실밥따기, 털옷 마무리, 마늘까기, 샷바느질 등) 74)건축노동. 막노동 75)취토사업 76)넙마주이
9. 농어민	77)부농(소유경작 6,000평이상) 78)중농(3,000-6,000평 미만) 79)소농(1,500-3,000평 미만) 80)빈농(1,500평 미만). 자소작농 81)농업 노동자. 품일꾼. 머슴. 사육일꾼. 농장관리인 82)자작농(규모미상) 83)축산(양돈). 낙농업 84)돼지장사. 소장사. 나무장사. 도살업 85)특수작물업
10. 기타(비경제활동 및 불용자)	86)주부 87)학생 88)군인(사병, 방위병) 89)한학자. 독립운동가 90)학원 수강생 91)연금 생활자

<연구후기>

** 길게는 1년, 짧게는 3개월동안 진행해온 연구작업을 마쳤다. 빈민장애인들이 지독한 삶의 질곡으로부터 하루빨리 해방되기를 염원하면서 밤낮없이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해준 두 연구원에게 감사드린다.

내 자신이 진정으로 빈민장애인과 4백만 장애인의 고통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이 작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끝냈는지 반성하면서 모든 변혁을 위한 움직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희 경

** 시작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다. 우리의 현실은 꾸역 꾸역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빈민장애인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분명 쉽게 생각해서 시작한 작업이 아니었음에도 연구보고서를 만들면서 그들의 삶의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고통을 지나치게 도식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마음이 든다. 현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

이 경 미

**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책안을 작성하면서도 내내 머리속을 맴돌던 빈민장애인의 한마디 " 목숨이 붙어 있느니까 사는거지, 사는게 아니죠 " 그러나 이제 가슴속에 꼬깃 접어두었던 희망을 펼쳐 들자. 화려한 백합보다 끈질긴, 이름없는 민들레의 생명력을 믿으며.....

김 중 환

<도움주신분>

- 조홍식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이익섭 교수(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 이태곤 기자(월간 함께걸음)
-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 한양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 서울대학교 손말 사랑회
- 김용수(더불어 기획 실장)
- 정태형(동아인쇄 대표)

그 밖에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실태조사 보고서

발행일 / 1994년 6월 8일

발행인 / 채종걸

발행처 /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133-170)서울 성동구 용답동 102-6

전화 / 216-0683, 242-6197

인쇄처 / 동아인쇄

(133-110)서울 성동구 성수1가 668-3

전화 / 499-9509